202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기관) 내 성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북

목차

Ⅰ. 사안처리 개요 | 1

1. 학교(기관) 내 성사안 처리 흐름도 | 3
2. 학교(기관) 성사안 발생 시 단계별 체크리스트 | 5
3. 성사안 발생 시 대상별 처리주체 및 학교(기관)의 역할 | 6
4. 피·가해 대상별 안내 사항 | 9

Ⅱ. 사안처리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 11

1. 상담 및 신고·접수 | 13
2. 사안조사 | 19
3. 심의 및 조치 결정 | 20
4. 조치 결과 이행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 23

Ⅲ. 학교(기관) 성사안 처리 관련 서식 | 29

Ⅳ. 부록 | 105

1.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 107
2. 피해지원기관 | 112
3. 학교(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사안 사례 | 113
4. 성사안 처리에 대한 판례 및 결정례 | 129
5. 성사안 처리 관련 법령 | 137
6. 성고충심의위원회 외 성사안 구제 외부 기관 안내 | 14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기관) 내
성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북

I

사안처리 개요

1. 학교(기관) 내 성사안 처리 흐름도
2. 학교(기관) 내 성사안 발생 시 단계별 체크리스트
3. 성사안 발생 시 대상별 처리주체 및 학교(기관)의 역할
4. 피·가해 대상별 안내 사항

1. 학교(기관) 내 성사안 처리 흐름도 (2페이지 접이형)

2. 학교(기관) 내 성사안 발생 시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		확인사항	체크
Ⅰ 신고 및 접수	1	수사기관에 신고 안내(112) 및 신고인의 의사에 따른 분리조치가 이루어졌는가? *교직원의 경우 신고요청 시 신고 가능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	성인에 의한 학생 피해자의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신고인/피신고인에 대한 초기 상담이 이뤄졌는가? [신고인의 의사 확인(상담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정보 수집 등]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비밀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행정절차 처리자. 관련자 비밀유지의무 고지 및 서약서 확인]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	성사안 처리에 대한 절차를 안내했는가? [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에게 사안처리 절차 안내]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성사안 발생 보고를 하였는가? -교육청 보고/ 수사의뢰 / 여성가족부 통보 등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보호자와 상담 및 피해 지원 등 진행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8	외부전문가 연계한 조사신청을 하였는가? (관련자 조사 및 속기사 등)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Ⅱ 사안 조사	9	(교직원에 의한 학생 피해자/관리자에 의한 교직원 피해) 전수조사가 이뤄졌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필요시 참고인) 조사가 20일이내(10일 연장가능) 이뤄졌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Ⅲ 심의 및 조치 결정	11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6인이상, 외부전문가 2인이상, 특정성별이 60%이상 넘지 않도록, 단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외부전문가 50%이상 구성)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2	위원회 개최 7일전 위원 및 관련자들에게 통지하였는가? (출석통지발송 및 회신, 위원참석요청 공문)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Ⅳ 조치 이행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제출	13	심의결과(성희롱 판단 시)는 감사담당부서로 공문(서류)제출하였는가? **(성희롱·성폭력 미판단 시 미제출)**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4	심의결과에 따른 (학생/교직원대상)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요청하였 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5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 및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치료 및 심리상담비·법률상담비 지급 신청)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6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하였는가? *사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교육청 관련부서)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성사안 발생 시 대상별 처리주체 및 학교(기관)의 역할

가. 처리주체

대상		처리주체
피해자	가해자	
학생	학생	-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처리
학생	교직원	- (의무) 피해학생이 만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에 근거 아동학대 처리 - (선택)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처리 - 피해학생이 가해교직원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사안접수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31조의2에 의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처리 ※ 학생 피해자 보호(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결정) 행위교직원관리(성고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
학생	기간제 교원	- 학생 : 교직원간 사안처리 절차 준용 ※ 기간제교원이 즉시 계약해지요청에 따라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권고, 단, 미개최 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의해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교원	학생	- 교육활동 중 발생 사안의 경우 교직원 학생 모두 교권보호위원회로 처리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는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처리, 행위 학생은 선도위원회로 징계 실시
교직원	교직원	- 수사기관신고 권고 -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신고인의 선택에 따라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처리 가능(선택)
교직원	기간제 교직원	- 수사기관신고 권고 -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기간제 교직원	교직원	- 수사기관신고 권고 -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업무 관련 제3자가 피해자(시간강사, 인턴. 사회복무요원 등)경우 포함

나. 학교(기관)의 역할

■ 법령상 학교(기관)의 역할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에 관한 연간 계획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사안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독립된 공간의 성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학교는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되 독립된 공간 필요 없음
- 고충상담창구 설치에 대한 학교(기관) 내외 인지가능 하도록 안내
-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학교(기관) 제외
  ※ 학교(기관) 홈페이지에 시교육청 사이버신고센터 안내 및 연계 방법 가능
- 성고충상담원 지정 운영(필수)
  ※ 남·여 각 1인 이상(총 2명 이상) 지정
  ※ 한 성별이 5인 미만인 경우 남·여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경우 1인 이상 지정 가능
- 성고충상담원 업무 연속성을 위해 1년 이상 해당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직원으로 지정
  ※ 전보 등 조직 내 인사로 새로운 성고충상담원 지정 시 업무공백화 최소를 위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성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조치
- 신규로 지정된 성고충상담원은 3개월 이내 전문교육 이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전문교육 이수(권고)

관련근거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 학교(기관) 구성원별 역할

※ 학생 간 성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진행

구성원	역할
학교장 (기관장)	- 성사안 해결의 총 지휘자로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 - 피·가해자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 시행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비밀유지 엄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 총괄 -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전수조사 실시 의뢰 ※ 특히 피해자가 학생,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 전수조사 필수 - 축소·은폐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교감 (기관장이 지정한 자)	- 인지에 따른 신고여부 확인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비밀유지 엄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 관리감독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상담(담임 및 성고충상담원 등) 진행 지도 관리 - 성고충상담접수 대장 결재 - 성고충심의위원회 준비관리 및 운영
담당 **(담임)** **교사**	- 피해학생 상담 및 정서적지지 - 보호자에게 사실 안내, 아동학대에 대한 112신고, 교육청 보고 ※ 보호자 안내 전 교감선생님과 협의 필수 - 신고인(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 아동학대업무 담당교사, 담임교사 등이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안 처리 - 행위자가 교직원인 경우 담당교사 등은 고충상담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수조사 협조 - 외부전문가 조사 요청 시 협조
성고충 **상담원**	- 평소 성사안 처리 과정 숙지와 학교(기관) 내 성사안 발생에 대한 사안접수 및 행정처리 업무 수행 -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 상담(상담일지 작성) 및 성고충상담 접수 대장 등록 -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에게 사안처리 절차 안내 - 피해자 심리상담 회복 치유 지원 및 연계 - 사안접수 학교장 보고 및 교육(지원)청 보고 ※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여성가족부 발생사실 통보 -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 각종 조사지원신청 - 피해자 심리상담 회복 치유 지원 및 연계 - 관련자(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행정처리 업무자 등)비밀유지 및 2차 피해방지 공지 - 성고충심의위원회 준비 및 운영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학교장, 교육청) - 재발방지대책수립 보고(여성가족부, 교육청)

4. 피·가해 대상별 안내 사항

대상별 운영회의		신고 접수 및 보고	사실확인 조사 주체
피해	가해		
학생	학생	1) 인지,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 보고(학교폭력처리) **4) 수사기관 신고(의무)**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 성폭력 이상 여성가족부 발생 보고(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학교 및 전담조사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처리			
학생	교직원	1) 인지,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 보고 -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생활지도 담당 (담임장학사※) - **고·특수학교: 본청 인성체육급식과** (담임장학사※) **4) 수사기관 신고(만19세 미만 의무)** ※ 여성가족부 발생 보고(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5) 학생 대상 전수조사**	• 학생 : 학교 담당자 (필요 시 성사안처리전문가 요청가능) • 교직원 : 성사안 처리 전문가 • 전수조사 : 성인권 시민 조사관 ※담임장학사에게 구두 보고
학폭위 (피해자 보호조치) - 선택	**성고충심의 위원회**		
교원	학생	1) 인지,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 보고 -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교권보호학사팀 **4) 수사기관 신고(피해자 의사에 따라)** ※ 여성가족부 발생 보고(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 교원 : 교권업무 담당자 • 학생 : 학교 담당자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미실시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학생은 선도위원회 운영 가능)			
교직원	교직원	1) 인지,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 보고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생활지도 담당(담임장학사※) - **고·특수학교 : 본청 인성체육급식과** 인성교육팀 (담임장학사※) ※ 교원, 지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또는 학교장 계약에 따른 직원 등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보고 **4) 수사기관 신고(피해자 의사에 따라)** ※ 여성가족부 발생 보고(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5) 전수조사(관리자에 의한 사안일 때 실시)**	• 교직원 : 성사안 처리 전문가 • 전수조사 : 본청 업무담당자 ※담임장학사에게 구두 보고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리자가 행위자인 경우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요청)			

Ⅱ

사안처리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1. 상담 및 신고·접수
2. 사안조사
3. 심의 및 조치 결정
4. 조치 결과 이행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1. 상담 및 신고·접수

가. 업무흐름도

※ 학생 간 사안 :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북 기준으로 처리

주관 : 학교

1단계 사안발생 인지 및 신고

- 학교 상담 신청 또는 시교육청 신고센터 접수
- 성고충상담원 상담 접수 안내
  ※ 접수 이전의 사안 관련 면담은 상담에 속하며 신고 대체 불가
  ※ 학생(만19세 미만) 피해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의무)

서식
[1-1]접수대장
[1-2]상담신청서
[1-3]상담일지
※ [1-7]수사의뢰서 공문,붙임

⬇

2단계 고충 상담 및 사안 신고서 접수

- 사안개요 및 증거 정황 정보 파악
- 신고인(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성고충상담창구 접수
  ※ 신고인(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상담만 원할 경우 상담으로 종결
- 신고인(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안내,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요청 시 대리 신고 가능
- 성사안처리 절차 안내(신고인/피신고인/보호자)

서식
[1-3]상담일지
[1-4-1]절차안내(신고인)
[1-4-2]절차안내(보호자용)
[1-4-3]절차안내(피신고인)

⬇

3단계 긴급 보호조치 및 발생 보고

- 신고인(피해자)와 피신고인(행위자) 분리 조치
- 성사안 발생 보고 필수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생활 지도 담당, 담임장학사
  - 고·특수학교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인성교육팀 담당, 담임 장학사
  ※ 담임 장학사에게 구두 보고 필수
-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 사건발생보고(선택)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보고
- 수사기관 신고(1단계에 했을 경우 생략)
- 요청 시 전문기관 연계 또는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치료지원 (성고충 심의 전 50만원, 성고충심의 후 성희롱 판정 시 추가 50만원 지원), 법률지원 (30만원 이내)
  ※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노무, 법률상담 지원 신청 가능
  ※ 친족 성폭력 등 심각한 성폭력으로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쉼터 의뢰 가능**[1-12]서식 활용**

서식
[1-5]2차 피해 방지
[1-6]접수보고공문,붙임
[1-7]수사의뢰서 공문,붙임
[1-8]사건발생통보공문,붙임 (여가부)
[1-9]피해상담지원요청
[1-10]의료,상담비 청구
[1-11]법률상담비 청구
*[1-10,11]은 사후 청구
[1-12]전문기관 연계의뢰

⬇

4단계 사실확인 조사 신청

- 학교(기관)내 사실확인 조사 신청
  - 전수조사
  - 관련인(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등) 조사 신청
  - 성고충심의위원회 속기사 신청

서식
[1-13]외부전문가지원신청 공문,붙임
[1-14]전수조사서식
[1-15]전수조사결과보고

나. 처리절차

※ 1.2.3단계는 동시에 진행 가능하므로 학교 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운영 가능

1단계 사안발생 인지 및 신고

면담, 상담, 목격, 언론 보도 등 관련 사실 인지 시 학교 종사자는 즉시(48시간 이내) 신고

서식
[1-1]접수대장
[1-2]상담신청서
[1-3]상담일지
※ [1-7]수사의뢰서 공문,붙임

대상별 행정사항

학생 피해자(행위자 성인)인 경우(19세 미만)

- **절차** : 학교종사자 인지 → 고충상담원 및 담임교사에게 알림
  → 학교장(감) 보고 → 신고의무(112), 보호자에게 신고 안내
  → 상담신청서, 상담일지, 접수대장 작성

※ 학교종사자는 법적 **신고의무자로서** 인지 즉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바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및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 수사개시가 이뤄짐을 안내(**신고와 공소는 별건임**)

성인피해자(교직원 등)인 경우

- **절차** : 학교종사자 인지 → 학교장(감)보고 → 피해자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 사건 접수 적극 안내 → 상담신청서, 상담일지, 접수대장 작성

※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요청 시 대리신고 가능하며,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인 경우 성인이라도 수사기관 신고

학교(기관) 업무담당자 역할

담당자	역할
인지자	담임교사 및 성고충상담원에게 사실 알림, 신고
교장 (기관장)	신고인(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관련 사실 보고 즉시 수사기관 신고, 축소 은폐 없이 원칙적 조사 총괄 감독
교감 (기관장이 지정한 자)	관련 사실 보고 즉시 수사시관 신고, 2차 피해 방지, 비밀 유지의무, 공정한 사안 처리에 대한 행정처리 총괄
성고충 상담원	관련사실 인지 즉시 교감 → 교장 보고 → (피해자 19세 미만)수사기관 신고(112) 및 사안 접수(상담일지, 상담신청서, 접수대장 작성) 필요성 건의
담당(담임) 교사	피해학생 상담 및 정서적 지지, 보호자에게 사실 안내, 아동학대에 대한 112 신고, 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서적 지지 ※ 보호자 안내 전 교감선생님과 협의 필수

2단계 상담 및 접수

- 피해자가 학교(기관)에 최초로 피해사실을 고지 후 고충 호소단계로 사안인지 및 신고와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
- 피해자가 성사안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사안 해결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

서식

[1-3]상담일지
[1-4-1]절차안내(신고인)
[1-4-2]절차안내(보호자용)
[1-4-3]절차안내(피신고인)

대상별 행정사항

대상자

- **학생(19세 미만)** : 학교에서 실시
  (학교에서 요청 시 성사안 처리 전문가에 의해 조사 가능)
- **성인(교직원 등)** : 성고충상담원(가급적 동성의 담당자가 면담 및 상담)

행정절차

- **절차** : 신고인(피해자) 상담신청 → 고충상담(사실관계 확인 및 신고인 신고의사 확인)
  → 고충상담 접수

※ 신고인(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상담내용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공유

※ 신고인(피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고충상담 창구 외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공무원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

학교(기관) 업무담당자 역할

담당자	역할
교장 (기관장)	축소, 은폐 없이 원칙적으로 사안처리 되도록 관리감독
교감 (기관장이 지정한 자)	-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비밀유지 의무 - 보호자와의 관련 사안 공유 시 의사소통 라인을 단일화, 담당자 지정 - 행정처리 총괄
성고충 상담원	- 고충상담 창구 접수 시 관련자 상담 진행, 행정적 절차 처리 · 상담일지 작성 · 비밀유지의무, 2차 피해방지 등 · 신고인(피해자) 의사 확인, 성사안 처리 절차 안내 - 행정절차 안내 및 관련 서류 서명 징구
관련 담당교사	신고인(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 아동학대업무 담당교사, 담임교사 등이 유기적 협의를 통해 사안 진행 협조, 적극적인 학생 보호 및 관리

3단계 긴급 보호 조치 및 발생 보고

- 1, 2단계와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시작점. 학교(기관)장은 신고인(피해자)의 의사 및 적극적 판단에 따라 응급처치·진료·심리상담, 분리조치 등 신고인(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 학교(기관) 내 성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고충상담원은 관련 사안 접수를 학교(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해당과(의무) 및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선택) 보고

대상별 행정사항

서식	
[1-5]2차 피해 방지 [1-6]접수보고공문,붙임 [1-7]수사의뢰서 공문,붙임 [1-8]사건발생통보공문,붙임 (여가부)	[1-9]피해상담지원요청 [1-10]의료,상담비 청구 [1-11]법률상담비 청구 * 1-10,11은 사후 청구 [1-12]전문기관 연계의뢰

행정절차

- 사실관계 및 상태 확인

→ 수사기관신고(학생 의무, 교직원 선택)/교육청보고(필수)/여성가족부 사건발생 통보(피해자 명시적 반대 없다면) → (필요 시) 외부기관 연계 응급조치 → (학생) 보호자 통보 → 신고인(피해자) 분리의사 확인 → (신고인/피신고인) 분리조치 → (요청 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신고인(피해자) 여성가족부 통보 의사 확인 → 학교장 결재 후 공문발송

※ 학교(기관)내 성사안의 피해자가 장애인, 다문화, 친족등에 의한 성폭력, 언론보도 등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의 경우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인성교육팀 성인식개선반(☎860-0150) 으로 유선 및 공문보고 필수

※ 긴급 보호조치는 1단계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신고인의 상태 및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조치

분리조치

-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신고인/피신고인과의 분리조치 검토
-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동선분리, 수업배제, 업무배제, 병가, 연가 등을 통한 적극 분리 권고
- 다만,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 경우에는 별도 분리조치 할 필요 없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별 접촉(유선연락 포함) 금지 반드시 고지
- 관련 법령에 의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 된 사안의 경우 '직위해제'(인사담당부서 판단)할 수 있음.

제출부서

구분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업무분장
초등학교	유초등교육지원과	인성체육급식과	-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주),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부), - 담임장학사(지원)
중학교	중등교육지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	인성체육급식과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주) - 담임장학사(지원)

단, 관련 직군에 따라 해당부서(행정지원과, 총무과, 학생학부모지원과, 노사행정지원과 등)와 연계하여 운영 가능

※ 학교별 담임장학사에게 구두 보고 필수

학교(기관) 업무담당자 역할

담당자	역할
교장 (기관장)	- 사안 인지 즉시 신고인의 의사에 따른 심리, 치료지원확인 -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 분리조치를 시행하고 원칙에 근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교감 (기관장이 지정한 자)	신고인(피해자) 의사에 따른 심리, 치료지원 및 분리조치, 2차 피해 방지 준수 총괄
성고충 상담원	- 교육청 보고 필수 - 피해자 명시적 반대 없으면 여성가족부 사건발생 통보(선택)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연계한 상담 지원 - 개인 심리상담, 치료, 법률 지원 안내
관련 담당교사	신고인(피해자)이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 아동학대업무 담당교사(**수사의뢰, 아동학대 교육청 보고**), 담임교사 등이 유기적 협의를 통해 사안 진행 협조, 적극적인 학생 보호 및 관리

4단계 사실 확인 조사 신청

- 신고인(피해자/대리인 등)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따른 사안 접수 후 성사안 처리 외부전문가 신청하여 사실확인 조사 실시

서식

[1-13]외부전문가지원신청 공문,붙임
[1-14]전수조사서식
[1-15]전수조사결과보고

대상별 행정사항

행정절차

- 관리자와 전수조사 일정, 신고인/피신고인 조사일정 일정 조율 → 성사안 처리 외부전문가 신청서 작성 및 학교장 결재 후 공문발송

※ 전수조사 : 피신고인(행위자)이 교직원인 경우 성인권시민조사관에 의해 실시

※ 성사안 처리 전문가에 의해 신고인(피해자, 교직원), 피신고인(교직원) 조사

☞ 학생 피해자의 경우 학교 교원에 의해 조사 원칙. 단, 요청 시 외부전문가에 의해 조사가능

제출부서

구분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업무분장
초등학교	유초등교육지원과	인성체육급식과	-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주),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부), - 담임장학사(지원)
중학교	중등교육지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	인성체육급식과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주) - 담임장학사(지원)

※ 학교별 담임장학사에게 구두 보고 필수(관련자 조사 시 입회)

학교(기관) 업무담당자 역할

담당자	역할
교장 (기관장)	추가피해 가능성 의심될 경우 전수조사 협조
교감 (기관장이 지정한 자)	- 사안처리 행정 절차 총괄 - 전수조사 및 사안조사 지원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점검
성고충 상담원	- 전수조사 일정, 신고인/피신고인 조사 일정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일정 협의 - 관련자 조사 시 입회 필수
관련 담당교사	- 담임교사 등은 고충상담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수조사 협조 - 외부전문가 조사 요청 시 협조

2. 사안조사

주관	1단계 성사안처리 외부전문가 지원, 조사실시	
학교	▪ (조사기간) 사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료/필요시 10일 이내 연장 가능 ▪ 관련인(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조사 일정 조율, 모니터링	
⬇		
교육(지원)청	**2단계 신고인(피해자) 조사**	**서식**
	▪ 외부전문가에 의한 조사 ▪ 비밀유지 의무 고지 및 정보 공유 범위 알림 ▪ 사실관계 정보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파악 ▪ 사안발생관련 증거자료 제출 및 필요시 참고인(목격자) 진술 요청 ※ 참고인이 있는 경우 피신고인 조사 전 참고인 조사 실시 (진행과정은 신고인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	[2-1-1~3]비밀유지 서약서 (피해자, 참고인, 조사위원) [2-2]민감정보처리 동의서 (피해자) ※참고인도 신고인과 동일한 서약서 받기
⬇		
학교	**3단계 피신고인 고지**	
	▪ 피신고인에게 사안접수 사실 고지(유선, 이메일 등)	
⬇		
교육(지원)청	**4단계 피신고인 조사**	**서식**
	▪ 외부전문가에 의해 조사 ▪ 당사자 서약 : 사안내용, 개인 신상정보 비밀유지의무 고지 및 서약, 2차 가해 금지 당부 ▪ 사안처리 절차 및 규정 안내 ▪ 사실 관계 증거자료 제출 및 필요시 참고인(목격자) 진술 요청	[2-1-2,3]비밀유지 서약서 (피신고인, 조사위원) [2-2]민감정보처리 동의서 (피신고인)
⬇		
학교	**5단계 조사의견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서식**
	▪ 신고인(피해자),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문답서 확인 ▪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학교⇨교육청) ▪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쟁점사항 및 사실관계 확인 ▪ 전문가 조사의견서 기초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 심의위원회 시나리오 작성 ※ 조정·중재 • 신고인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시 조정 및 중재 가능 *조정 중재는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가능 *임의 조정중재로 2차피해가 되지 않도록 절대 유의	[2-4]조사결과보고 공문,붙임 [참고1]회의자료(예시) [참고2]시나리오(예시) [2-5]종결 결과 보고 공문,붙임 [2-5-1~3]

3. 심의 및 조치 결정

가. 업무흐름도

주관	**1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	**서식**
		▪ 심의위원회 구성(최소 6명 이상) 및 회의준비 – 회의자료, 회의 시나리오 – 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조사문답서 및 조사의견서 – 제출 증빙자료 – 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동선 파악	[3-1]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 참석안내 공문,붙임(내부결재용) [3-2]위원참석안내,붙임
	⬇		
	2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서식**
학교		▪ 비밀누설 금지 의무 안내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 회피 여부 확인 ▪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별도 장소 대기(동선 겹치지 않도록) ▪ 사실확인 조사결과 보고 ▪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 –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필요시) ▪ 심의 의결 – 성희롱·성폭력 성립여부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조치 – 재발방지대책 – 기타 당부사항 등	[3-3]비밀유지서약서 [3-4]기피신청서 [3-5]회피신청서

나. 처리절차

1·2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 피해자 보호조치(2차 피해 방지 포함), 그 밖에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

서식

[3-1]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 참석안내 공문,붙임 (내부결재용)
[3-2]위원참석안내,붙임
[3-3]비밀유지서약서
[3-4]기피신청서
[3-5]회피신청서

대상별 행정사항

행정절차

–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련자(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참석요청 공문 → 참석자 회신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비밀유지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자(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필요 시 참고인 참석요청 통지서는 내부결재 후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우편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개인 메일 송부 가능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 유의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 단,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인 경우 3인 이상(외부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 사안조사 과정에 참여한 내부 또는 외부위원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참여 불가

② 위원장은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
단,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외부위원은 50% 이상 구성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간사는 심의의결권 없음

⑤ 위원회 개최(참석안내) 통지는 위원 및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에게 최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 권고 (필요 시 참고인에게도 통지)

♠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흐름도

구분	내용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 심의위원회 일정 조율 - 최소 6명 이상(외부위원 최소 2명 이상, 성인에 의한 학생 피해자인 경우 50% 이상) - 특정 성별비율이 전체구성원의 60% 넘지 않도록 - **고충상담원은 간사이나 심의위원에 해당하지 않음(심의 의결권 없음)** -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는 심의위원으로 지정 불가
⬇	
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 심의위원 및 관련자(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에게 일정 알림 - 관련자(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의 참석 여부 확인 * 참석 불가한 경우 서면진술서로 대체 가능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로 속기사 지원 요청
⬇	
심의위원회 개최	- 당일 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 및 시간 배분 - 회의자료 등 관련자료 준비 - 회의 시 위원 및 참석자의 의사확인, 제척·기피 확인 -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필요시) 순서로 질의응답 진행 - 성희롱 여부 판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 심의

학교(기관) 업무담당자 역할

담당자	역할
교장 (기관장)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 관리감독
교감 (기관장이 지정한 자)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 자료 검토 및 총괄 -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성고충 상담원	- 위원회 구성 및 일정 조율, 참석 안내 및 회신 등 - 위원회 회의자료 및 관련 자료 작성, 비치 - 위원회 간사 역할 및 결과 정리

4. 조치 결과 이행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가. 업무흐름도

주관	1단계 심의 결과 보고 및 통보	서식
학교	▪ 심의결과 보고 ▪ 신고인/피신고인 결과 통보 ▪ 심의결과 교육(지원)청 감사부서로 자료 송부 – 심의결과 보고서/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자료 –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조사문답서 및 조사의견서 – 제출 증빙자료(일체) ※ 제출부서 ◦초·중학교 · 교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유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 일반직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고·특수학교 · 교원(일반직) : 시교육청 감사관실/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교육공무직원 : 시교육청 감사관실/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4-1]심의결과보고 공문 (내부결재) [4-1-1,2]의결서,결과보고서 [4-2]심의결과통지서 공문, [4-2-1,2]붙임 [4-3]심의결과 및 관련 자료 제출 공문(감사부서)
	⬇	
	2단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제출	서식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여부, 성사안 발생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제출 :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제출부서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4-4] 재발방지대책 공문,붙임 [4-5]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강사지원 신청 [4-6]행위자(성인)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신청서 [4-7]행위 학생 성인지감수성향상 교육 신청 [4-8]행위자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기관용) [4-9]행위자 교육 이수확인서 (교육기관용)

나. 처리절차

1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및 통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감사부서로 심의결과 및 관련 자료 제출, 관련자(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행위자))에게 통보

서식

[4-1]심의결과보고 공문 (내부결재)
[4-1-1,2]의결서,결과보고서
[4-2]심의결과통지서 공문,
[4-2-1,2]붙임
[4-3]심의결과 및 관련 자료 제출 공문(감사부서)

대상별 행정사항

행정절차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내부결재) → 성희롱 판단 시 교육(지원)청 감사부서 /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및 운영 관련 자료 일체 공문제출 → 신고인/피신고인에게 심의위원회 결과 통지

※ 심의결과는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행위자)의 요청에 따라 우편 또는 메일 송부

※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불가능함을 안내,** 향후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직군별로 행정심판, 소송 및 소청심사 제기 가능

※ 심의결과 성희롱 판단 시 감사부서 및 관련 부서로 심의결과, 관련 자료제출

- 제출부서

(초등학교 교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유초등교육지원과/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중학교 교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고등·특수학교 교원) 시교육청 감사관실, 인성체육급식과
(일반직) 초·중학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고·특수학교(시교육청 감사관실, 인성체육급식과)
(공무직 등) 시교육청 감사관실, 인성체육급식과

- 제출자료

심의 결과보고서 / 회의자료 / 회의속기록/ 관련자(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조사 문답서 및 조사의견서 / 관련자 증거제출자료 일체

학교(기관) 업무담당자 역할

담당자	역할
교장 (기관장)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관리감독
교감 (기관장이 지정한 자)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직원 관리
성고충상담원	- 심의위원회 결과 학교장에게 보고 - 교육지원청·시교육청 관련 부서에 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심의위원회 결과 신고인/피신고인에게 통보

2단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제출

- 성고충심의위원회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u>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u>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제출, 사건발생 통보 여부·심의결과 상 성희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보고(제출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2)

  ※ 학생 간 학교폭력 중 성폭력(형법 상 추행 이상, 디지털 성폭력 전체) 발생 시에도 학교폭력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련 서식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제출 필수

★ 기관은 예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출 (제출방법 P.26~27 참조)

서식

[4-4] 재발방지대책 공문, 붙임
[4-5]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강사지원 신청
[4-6]행위자(성인)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신청서
[4-7]행위 학생 성인지감수성향상 교육 신청
[4-8]행위자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기관용)
[4-9]행위자 교육 이수확인서 (교육기관용)

대상별 행정사항

행정절차

-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여부와 상관없이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발방지대책 제출 → 학교(기관)내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 신청 및 운영

※ 행위자(학생)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 및 학생 대상 교육신청

※ 공문발송 부처

- 초·중학교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 고등·특수학교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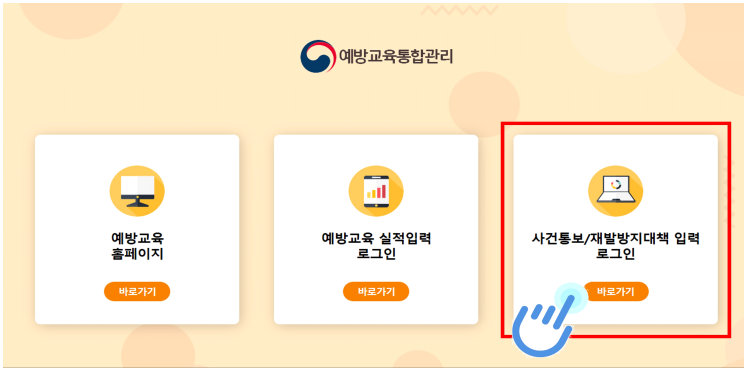
※ 공문발송제목 : 「학교 사안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제출」로 표기, 비공개 열람제한(1,6호), 열람시 암호 확인 체크

※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24.4.19. 시행)]

학교(기관) 업무담당자 역할

담당자	역할
교장 (기관장)	학교(기관)내 재발방지대책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관리감독
교감 (기관장이 지정한 자)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운영사항 관리 -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 운영 관리 - (성희롱 인정 시) 피신고인 조치사항 이행 관리감독
성고충 상담원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 -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 일정 조율 및 신청, 실시 - (성희롱 인정 시)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및 지속적인 관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원청 및 직속기관(도서관 포함) 재발방지대책 보고 방법



(바로가기클릭)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기존 예방교육 실적입력사이트)

①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건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접속

② 성고충상담원, 관련부서장 홈페이지 등록방법

사용자 등록 → 회원가입 약관 동의 → 본인인증 → 회원정보 입력 → 확인

☞ 시스템 가입 및 공문 발송 → 여성가족부(가입자 대조 후 승인) → 가입자 시스템 이용(승인 전 사용 불가)

* (작성 및 제출 권한)

❶ 작성은 기관 담당자의 권한으로 작성만 가능,

❷ 제출은 기관 관리자의 권한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하므로

담당자=작성, 관리자=제출 선택

상신	⇨	확인	⇨	제출
작성자		제출자		제출자

※ 작성자와 제출자 각각 별도 계정 가입 필요

③ 시스템 가입 절차 진행 후 아래 서식(예시)으로 가입 요청 공문 발송

(수신처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기관명	부서명	권한	성명	비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과	작성	홍실무	성고충상담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과	작성	최상담	성고충상담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과	제출	나과장	성고충처리부서장

* 시스템 접속 이후에는 시스템 내 Q&A 게시판 등을 통해 문의 가능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02-2100-6164, 6166)

공문예시

○○○기관명

수신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장

(경유)

제목 **○○○기관 사용자 등록관련 가입 승인요청**

1. 관련: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2015(2024.3.18.)
2. ○○○기관에서 사고통지 및 재발방지대책 계획 제출을 위한 사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부서명	권한	성명	비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과	작성	홍실무	성고충상담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과	작성	최상담	성고충상담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과	제출	나과장	성고충처리부서장

끝.

Ⅲ

학교(기관) 성사안 처리 관련 서식

※ 필수 공문 발송 시 비밀유지
(비공개(1,6호), 목록공개, 열람시 암호확인 – 체크)
★ 관련 공문 열람 시 내용 누설 금지 ★

단계	관련서식		P.
1. 상담 및 신고 접수	1-1	성희롱·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32
	1-2	상담신청서	33
	1-3	상담일지	34
	1-4-1~3	절차안내(신고인 / 보호자 / 피신고인)	35-37
	1-5	2차 피해방지	38
	1-6(공문/붙임)	(공문) 성사안 접수보고/붙임서식	39-40
	1-7(공문/붙임)	(공문) 성사안 수사의뢰서/붙임서식	41-42
	1-8(공문/붙임)	(공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통보/붙임서식	43-45
	1-9	피해상담(심리, 노무, 법률)지원요청	46
	1-10	의료·상담치료비 지급청구서	47
	1-11	법률상담비 지급청구서	48
	1-12	전문기관 연계 의뢰(친족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 분리 필요 시)	49
	1-13(공문/붙임)	(공문) 성사안 처리 외부전문가 지원 신청/붙임서식	50-51
	1-14	전수조사 서식	52-53
	1-15	전수조사 결과보고(교육청 ⇨ 학교)	54
2. 사안 조사	2-1-1~3	비밀유지서약서(피해자,참고인 / 피신고인 / 조사위원)	55-57
	2-2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58
	2-3	조사문답서 (예시)	59
	2-4(공문/붙임)	(공문) 조사결과보고/붙임서식	60-61
	참고자료1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자료	91-95
	참고자료2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나리오	96-103
	2-5(공문/붙임)	(공문) 성사안 종결 결과보고/붙임서식(종결동의서, 사과문, 합의서)	62-65
3. 심의 및 조치 결정	3-1(공문/붙임)	(공문)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참석안내/붙임서식	66-67
	3-2(공문/붙임)	(공문) 심의위원 참석요청/붙임서식	68-69
	3-3	비밀유지서약서(심의위원용)	70
	3-4	기피신청서(당사자용)	71
	3-5	회피신청서(심의위원용)	72
4. 조치 이행 및 재발 방지 대책	4-1(공문/붙임)	(공문) 심의결과보고/붙임서식	73-75
	4-2(공문/붙임)	(공문) 심의결과(신고인,피신고인)통보서/붙임서식	76-78
	4-3(공문)	(공문) 심의결과 및 관련자료 제출(학교 ⇨ 교육청 감사부서)	79
	4-4(공문/붙임)	(공문) 재발방지대책 제출/붙임서식	80-85
	4-5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강사지원(학생/교직원)신청	86
	4-6	행위자(교직원)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신청서	87
	4-7	행위학생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	88
	4-8	행위자 교육 결과보고서(교육실시기관 ⇨ 학교, 교육청)	89
	4-9	행위자 교육 이수확인서(교육실시기관 ⇨ 교육청)	90

서식 1-1 성희롱 · 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20 .00.00)	회신 일자	담당자	
			성명	소속 부서				이름	교감
20 . -1	*20 .. ○.○.*		*김***	***부*	*성희롱*	*상담 종결 (20 . 00.00)*	*-*		
20 . -2	*20 . ○.○.*		*이***	***부*	*성희롱*	*성고충 심의 위원회 (20 . 00.00)*	*○.○ (결과 통지일)*		

※ 접수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기관여건에 따라 전결 가능(단, 기관장에게는 반드시 보고)

※ 접수처리대장은 고충상담원이 작성 → 수기결재(교감)

※ 비밀유지 엄수 고지(고충상담원 → 교감, 관련자)

※ (신고의무)고충상담창구 접수 시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학생인(19세 미만) 경우 인지 즉시 수사시관(112)에 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9조 신고의무,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1항

※ 수사기관 신고 완료 후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 안내 [신고는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이며, 신고와 공소(조사)와는 별건임을 안내 필요]

※ 신고인이 교직원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 안내,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서식 1-2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신청서

당사자	피해자 (신고인)	성명 (성별)		소속(학교)	
				직급(학년)	
		연락처			
		E-mail			
	대리인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학교)	
				직급(학년)	
		연락처			
		E-mail			
	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성별)		소속(학교)	
				직급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육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 유무 등을 기록*				
요구 사항 (중복체크 가능)	1. 성희롱 중지(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사건의 상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3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접수번호: ○○학교/기관 제20○○-○호

상담일	20 년 월 일 시		**상담자**	
내 담 자	이름		**성별**	
	소속부서 /학년반		**생년월일**	
	① 학생 ② 교원 ③ 직원 ④ 보호자 ⑤ 기타( )			
상담방법	① 대면 ② 전화 ③ 온라인 ④ 기타		**상담 회차**	회

상담내용

※ 피해자 주호소 내용(육하원칙에 맞춰서)
※ 접수 후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절차 안내문 : 서식 00)
※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분리조치 및 전문 상담 등)
※ 관련자(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행정 처리 업무자 등) 비밀서약서 작성
※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원할 경우 반드시 상담신청서를 접수해야 함을 안내
※ 신고인이 고충 상담만 희망하고 그 이외의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상담일지 아래에 '사안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자필 기재 및 서명 (신고인이 학생이면 보호자 동의 필수)
※ 상담일지는 성고충상담원이 작성
필요시 학교장의 판단하에 상담교사, 담임교사, 외부 전문기관 등으로 상담 진행 가능
※ 신고인이 학생이면 관련 내용을 보호자에게 공유
※ 신고인이 사안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요청이 있다면 사안 접수 유보 가능

*내담자가 학부모 외 제3자, 대리인일 경우 관계 제시

[상담단계 및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기재] ※ 해당란에 ○ 표시

신고 미희망		**신고 희망**			
고충상담	조정 · 중재	고충심사 위원회	교권보호 위원회	성고충심의 위원회	수사기관
상담으로 종결 가능	*조정중재로 종결 가능*	*조사신청서 접수*	*조사신청서 접수*	*조사신청서 접수*	

작성일자 : 년 월 일 (시간:)
작 성 자 :

성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신고인용)

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성희롱'이란**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함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2.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

모든 사항은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 및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등에 의거 신고인의 의사를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첫째,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인 호소 내용, 요청사항, 의사 확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본인의 희망에 따라** 피신고인(행위자)에 대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상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신고접수를 요청할 경우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선택 사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피신고인(행위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되면 피해자 보호 조치와 더불어 행위자에 대해 감사관에 감사 요청됩니다.
(성희롱·성폭력 판단 시에만 감사 요청)

셋째, **피해자가 일상회복을 위해 원할 경우 심리상담 및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개인심리회복지원(1인당 50만원 이내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후기)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되면 피해자 추가 지원 (50만원 이내)

마지막, 성사안 처리 과정은 본인 희망 시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조정·중재 요구 시 조정·중재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 성립 시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학교(기관)장

서식 1-4-2 **성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 (보호자용)**

* 학생 피해자인 경우

성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보호자용)

1. 학교(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성희롱'이란**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함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2. 학교(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 안내

학교 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1항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의거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학교(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

모든 사항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첫째, 성희롱·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이 피해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심의기구에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둘째,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자치기구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를 통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인(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행위자(성인)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요청 상담신청과 사건접수를 해야 합니다.

넷째,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자치기구로서 가해자(교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 시 행위자에 대해 감사관에 감사 요청됩니다. **(성희롱·성폭력 판단 시에만 감사 요청)**

다섯째, 피해자가 원할 경우 회복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및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개인심리회복지원(1인당 50만원 이내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후기)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되면 피해자 추가 지원 (50만원 이내)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과 중복 불가

마지막, 성사안 처리 과정은 본인 희망 시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기관)장

성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피신고인용)

1. 학교(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성희롱'이란**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함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2. 학교(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

모든 사항은 교육부 학교(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 및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에 의거 신고인의 의사를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첫째,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관련 사실에 대한 안내 및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신고인은 비밀 유지 및 신고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인의 희망에 따라** 피신고인(행위자)에 대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건 접수가 되면 **학교(기관)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조정·중재 요구 시 조정·중재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 성립 시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단,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조정·중재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별건으로 신고 가능)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피신고인(행위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되면 피해자 보호 조치와 더불어 피신고인에 대해 감사관에 감사 요청됩니다.
(성희롱·성폭력 판단 시에만 감사 요청)

○○○학교(기관)장

서식 1-5 **2차 피해 방지 서약서 (피신고인)**

2차 피해방지 서약서(피신고인)

[직 책]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본인은 남녀고용법등법 제14조 제6항,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등에 의거

_____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신고인 및 주변에 대한 접근, 전언 등 2차 피해 유발 금지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 주변인에 보복행위 등 사적 접근 금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형사처벌 및 1차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와 별개의 행위로 조사가 요구되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학교(기관)장 귀중

공문서식 1-6

성사안 접수 보고 표지공문 (예시)

※ 성사안 발생 시 보고 필수

○○○학교/기관명

수신 *문서발송부서 참조*

공문 제목에 '성희롱, 성폭력' 관련 용어 사용하지 않기

(경유)

제목 **학교(기관) 내 사안 발생 접수 보고**

1. 관련: ○○○학교(기관명) 20○○-0(※사안 접수번호)
2. ○○○학교(기관) 사안 발생 보고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사안접수보고서(20○○-0). 끝.

※ 문서 발송부서

구분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업무분장
초등학교	유초등교육지원과	인성체육급식과	-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주),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부), - 담임장학사(지원)
중학교	중등교육지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	인성체육급식과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주) - 담임장학사(지원)

단, 관련 직군에 따라 해당부서(행정지원과, 총무과, 학생학부모지원과, 노사행정지원과 등)와 연계하여 운영 가능



※ 문서 등록 시 보안 철저
- 문서공개여부
  비공개 (1,6호 체크)
- 기타보안
  (열람 시 암호 확인)

붙임서식 1-6

사안 접수 보고서

접수번호: ○○학교/기관 제20○○-○호

구분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기관만 해당)	업무 담당자	성 명: 직통전화:

신고자	성명		소속/직위 (학생:학반)	
발생 일자	20 . . . (요일) 00:00			
인지 일시	20 . . . (요일) 00:00			

관련자		성명	소속/직위(학반)	성별	생년월일	구분
	피해자					교원/직원/학생/외부인
	행위자	성명	소속/직위(학반)	성별	생년월일	구분
						교원/직원/학생/외부인

사안 내용 (※ 육하원칙 따라 서술)	
피해자 요구사항 (중복체크 가능)	□ 학교폭력피해학생 보호조치(학생인 경우만 체크) □ 징계 등 인사조치 □ 사과, 재발방지 조치 □ 필요한 보호조치( )
담당자 확인사항	1.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2. 피해자가 만18세 미만입니까? □예 □아니오 3. 피해자가 '장애인'입니까? □예 □아니오 4.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의무와 보호자 고지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5. 피해자가 여성가족부에 사건발생사실 통보를 원합니까? □예 □아니오 6. 피해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까? [* 학생 피해자, 교직원 행위자인 경우 해당없음 체크 불가] □예 □아니오(사유:) □해당없음

공문서식 1-7

성사안 수사의뢰 표지 공문(예시)

○○○학교/기관명

수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유)

제목 학교(기관) 내 사안 수사의뢰

1. 근거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다. 경찰청 아동청소년과-1820(2023.6.2.)
   라.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1675(2025.6.12.)
2.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수사를 의뢰합니다.

붙임 수사의뢰서 1부. 끝.

※ 초,중,고등(특수)학교 **학생 피해자(수사기관 신고 의무), 교직원 피해자(성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신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형법 제303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청소년 보호매뉴얼(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경찰청 협의사항) P.19
- (공문수사의뢰) 신고·처벌 의사 확인 및 신고내용 명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 측에서 관할 경찰서 앞으로 수사 의뢰 형식 공문 발송**
  - 추후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 공문 발송 권장
- (117 상담신고) 신고목적(형사처벌신고, 단순 법률상담 등)에 대해 명확히 전달하고 상담사의 질문(개인정보 등 포함)에 대해 상세히 답변
- (112 긴급신고) 긴급상황에서 구조·검거 등 경찰 출동이 필요한 경우
  -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지구대, 파출소)등에게 관련 사안 내용 상세 진술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 학교전담경찰관은 구두, 유선을 통해 성범죄 신고사항 진술 시
    ❶ 신고내용 명확화 및 신속한 수사부서 연계 ❷ 의무이행 입증 근거로 활용되어 신고의무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절차(공문, 112, 117)에 따라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의무자 신고시에는 **① 신고자 이름과 연락처 ② 피해학생 이름, 성별, 생년월일(나이), 주소 ③ 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나이) ④ 성범죄로 의심되는 이유 등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상세히 알려 주어 피해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고자가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정보를 알면서도 일부러 제공하지 않아 신고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미신고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어 **신고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음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제2항, 제67조 제4항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서식 1-7

성희롱 · 성폭력 사안 수사 의뢰서

<table>
<tr><td rowspan="2" colspan="2">신고자</td><td>성명</td><td></td><td>소속/직위
(학생:학반)</td><td></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발생 일자</td><td colspan="4">20 . . . (요일) 00:00</td></tr>
<tr><td colspan="2">인지 일시</td><td colspan="4">20 . . . (요일) 00:00</td></tr>
<tr><td rowspan="6">관련자</td><td rowspan="2">피해자</td><td>성명</td><td>소속/직위(학반)</td><td>성별</td><td>생년월일</td><td>연락처</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보호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 rowspan="2">행위자</td><td>성명</td><td>소속/직위(학반)</td><td>성별</td><td>생년월일</td><td>연락처</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보호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 colspan="2">사안 내용
(※ 육하원칙 따라 서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참고사항</td><td colspan="4">수사에 참고할 만한 사항 기재</td></tr>
</table>

위의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합니다.

20 . 00. 00.

○○○학교장(기관장)

***가해자가 성인 또는 인적사항 불상인 경우 인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충실히 기입**

공문서식 1-8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공문(여성가족부 발송용)

※ (학교)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여성가족부로 보고
※ (기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건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보고

○○○학교/기관명

수신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장

(경유)

제목 학교 내 사안 발생 사실 보고

1.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2. 학교 내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학교(기관) 사안 발생 사실 통보서(20○○-1). 끝.

※ 여성가족부 통보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

※ 문서 등록 시
- 문서공개여부 : 비공개(1,6호 체크)
- 기타확인(열람 시 암호 확인)

붙임서식 1-8

성희롱 · 성폭력 사건발생 사실 통보서(여가부 통보)

※ 2024년 변경된 서식

담당자(직급)	000 부장
연락처	000-000-0000

□ **사건 개요**

구분	내 용	응답값
시점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 특정일 (날짜 20＊＊-00-00) □ 특정기간 (20＊＊-00-00 ~ 20＊＊-00-00) □ 특정불가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00-00)
	○사건 통보일	날짜 기재 (20＊＊-00-00)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사건발생기관 유형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 해당 □ 미해당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 1인, □ 2인 이상) 피해자(□ 1인, □ 2인 이상)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 기관장-하급자 □ 상급자-하급자 □ 하급자-상급자 □ 동료교사-학생 □ 학생-교사 □ 학생-학생 □ 기타( )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유형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 남성-여성 □ 여성-남성 □ 남성-남성 □ 여성-여성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 여부	□ 신고 (신고일 날짜 :) □ 신고 예정 □ 미신고 (미신고 사유 선택 : □피해자 의사 □기타) □ 해당없음
보호 조치 사항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행위자와 분리 여부 (예시) 행위자 업무 공간 이동, 행위자 전보, 피해자 휴가 등	□ 예 □ 아니요 □ 조치예정 - □ 행위자 업무공간 이동 □ 행위자 전보 □ 피해자 휴가 □ 기타 (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여부 (예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외부기관 연계	□ 예 □ 아니요 □ 조치예정 - □ 심리상담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외부기관 연계 □ 기타 ( )
주요 내용 (사건 신고·접수 개요 등)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300자 미만으로 기재*	
기타	※ 외부기관(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사건처리상황, 언론보도사항, 2차 피해 관련 사항 등 100자 미만으로 기재하여 작성(익명처리 동일)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사건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서식 1-9

학교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요청서

※ 상담일정 및 시간은 학교에서 방문 예정 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일정 조율 가능
※ 심리상담은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임.

<table>
<tr><td>학교명</td><td colspan="2"></td><td rowspan="3">요청분야
및
일시</td><td>심리상담</td><td>월 일 시</td></tr>
<tr><td rowspan="2">교장</td><td>성 명</td><td></td><td>법률상담</td><td>월 일 시</td></tr>
<tr><td>전화번호</td><td></td><td>노무상담</td><td>월 일 시</td></tr>
<tr><td rowspan="2">교감</td><td>성 명</td><td></td><td rowspan="2">담당교사</td><td>성 명</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4">피해자
정보</td><td>성명</td><td></td><td>성별</td><td colspan="2"></td></tr>
<tr><td>직위</td><td colspan="4">☐ 학생(학년 반) ☐ 교원
☐ 교직원 ☐기타( )</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4"></td></tr>
<tr><td>보호자 성명</td><td>피해자가 학생인 경우</td><td>연락처</td><td colspan="2">피해자가 학생인 경우</td></tr>
<tr><td>사안 내용</td><td colspan="5"></td></tr>
<tr><td>확인 사항</td><td colspan="5">보호자 동의여부(학생인 경우) ☐예 ☐아니오</td></tr>
</table>

위와 같이 찾아가는 피해자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법률상담, 노무상담)을 신청합니다.

20 . 00. 00.

○○○학교(기관)장

서식 1-10 의료비·심리상담비 지급청구서

※ 성고충심의위원회 실시 전까지 50만원 이내, 성희롱 결정 후 추가 50만원 이내 지원

피해자 지원 대상 정보					
기관명					
담당자	성명		청구신청 차수		
	연락처	(유선)	청구신청일		
		(핸드폰)			
피해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결과 ☐ 여 ☐ 부	
피해자 지급 청구서					
치료구분 (중복체크가능)	☐ 외래치료 ☐ 입원치료 ☐ 심리상담		치료기간[1] (영수증 청구분 표기)	월 일 ~ 월 일	
치료기관명			치료기관 소재지		
청구비용[2]	병(의)원 치료비	진료비 총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		환자(본인)부담금	
	심리상담비				
	총 청구금액				
의료비 지급계좌 정보	예금주	(부,모,기타:)	주민등록번호	-	
	은행명		계 좌 번 호		
	주 소				
	계좌정보 제공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예금주 계좌정보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비용 지급 시에 필수로 필요한 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용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1. 공통 : 예금주 통장사본 2. 병의원 이용자 : 보험회사제출용 영수증 (*세부내역 확인可, 간이영수증 불가) 3. 심리상담센터 이용자 : 심리상담확인서, 영수증 *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되며, 신고일 이후 영수증만 가능				
작성방법	1. 영수증 청구분에 기재된 치료기간 전체 2. 보험회사제출용 영수증의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작성, 모든 제출 영수증의 항목별 총액을 기재 3. 반드시 치료비를 선결제한 후 청구할 것 (병원, 심리상담센터로 직접 입금 및 대납 불가)				

년 월 일

예금주(보호자 또는 대리인) : (서명)

서식 1-11 법률 상담비용 지급청구서

※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30만원 이내

피해자 지원 대상 정보				
학교(기관)명			성 명	
주 소			연락처	
요청내용				
피해자 지급 청구서				
법률사무소			상담일시	
담당변호사			법률사무소 소재지	
지급계좌 정보	예금주	(부,모,기타:)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정보 제공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예금주 계좌정보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비용 지급 시에 필수로 필요한 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용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예금주 통장사본, 상담비용 영수증, 변호사사무실 상담 확인서 (유의사항) 반드시 상담비를 선결제한 후 청구할 것 (변호사사무실로 직접 입금 및 대납 불가)			

년 월 일

예금주(보호자 또는 대리인) : (서명)

서식 1-12 전문기관 연계 의뢰서 (외부기관 상담, 보호 등 의뢰 시)

※ 친족 성폭력 등 심각한 성폭력으로 분리 및 쉼터 등 의뢰용

의뢰기관 (학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연계 기관명		담당자			
연계 대상자	성명		성별		
	연락처		학년(연령)		
사안유형	☐ 강간/유사강간/준강간 ☐ 성추행 ☐ 언어적 성희롱 ☐ 2차 피해(관련자 회유, 협박/고용상 불이익/소문 등) ☐ 성차별 ☐ 문자/영상 등 ☐ 기타( )				
사안 내용	(기본정보) 대상자 정보 (주요피해) 피해사실 기록 (사건직후 조치) 조치 대응상황 (피해자 현재 상황) (피해자 요구 사항) (상담원 조치사항) (향후 진행방향)				
의뢰 요청사항					

위와 같이 연계 의뢰합니다.

20 . . .

○○○학교(기관)장

공문서식 1-13

성사안 처리 외부전문가 지원 신청 표지공문 (예시)

※ 피해자(행위자 등)조사, 속기사(성고충심의위원회), 중재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기관명

수신 문서발송부서 참조
(경유)

제목 학교(기관) 내 사안처리 외부전문가 지원 신청

1. 관련: *○○학교/기관 제20○○-○호*
2. ○○○학교(기관명) 20○○-1(※접수번호) 사안처리를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학교 사안처리 외부전문가 지원신청서 1부. 끝.

※ 문서 발송부서

구분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업무분장
초등학교	유초등교육지원과	인성체육급식과	-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주),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부), - 담임장학사(지원)
중학교	중등교육지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	인성체육급식과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주) - 담임장학사(지원)



※ 문서 등록 시 보안 철저
- 문서공개여부
  비공개 (1,6호 체크)
- 기타보안
  (열람 시 암호 확인)

붙임서식 1-13

성사안 처리 외부전문가 지원 신청서

※ 요청분야의 운영일정은 신청 후 해당 외부전문가와 협의하여 일정 조율 예정

※ 성인 행위자에 의한 학생 피해자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요청가능

접수번호: ○○학교/기관 제20○○-○호

학교명					
교장	성 명		**교감**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담당교사	이름		전화번호		
요청 분야 및 일정	☐ 조사위원(피해자,행위자 등)		년 월 일 00:00		
	☐ 속기사(성고충심의위원회)		년 월 일 00:00		
	☐ 중재위원(피해자 중재 요청 시)		년 월 일 00:00		

관련자 정보	**피해자**	직위 (학반)		성명 (성별/나이)	
	행위자	직위		성명 (성별/나이)	
사안 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서술)				
기타 사항	*외부전문위원 희망성별, 요청명수 등 기입*				

위와 같이 성사안 처리 외부전문위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기관)장

서식 1-14 **전수조사 서식 (교육청 성인권시민조사관 실시)**

※ 학생(피해자), 교직원(행위자)인 경우 실시

설문방법 안내문(보관용)

이 설문은 학교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교에 재학하면서 **교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직접 당했거나 본 것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라며,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과 허위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시"
❶ 신체적 : 허벅지, 가슴, 엉덩이 등 신체부위 접촉, 안마 강요 등
❷ 시각적 : 카톡, 문자 등으로 성적인 행위, 언행,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보내는 행위 등
❸ 언어적 : 성관계/성행동 묘사, 가슴/엉덩이 등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언급

피해자의 전화번호는 경찰신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보가 없다면 사건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설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폭력신고 전용 메일(schoolsafe@korea.kr)
-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마당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http://www.pen.go.kr),
- ☎ (117, 112, 860-0150) **으로 알려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없는 학생은 〈설문지〉 3번 칸에 성폭력 피해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적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 등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보하는 학생들이 내용을 적는 속도와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공정한 설문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구청 아동보호팀 관계자분이 참관할 수 있으며, 설문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건전한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과 친구들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안내문은 소지하여 활용하시고, 작성을 마친 설문지는 뒤집어 두면, 뒤에서부터 걷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사 설문지

※ (1~5) 해당 문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직원(교사, 행정실 직원 등)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해당란에 "V" 표**)
   ① 있다 (　　) ⇒ 2번으로 이동　　② 없다 (　　) ⇒ 3번만 작성

2. **(1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한 자만 해당)** 피해를 당했거나 본 것에 관하여 기억나는 대로 적어 주세요.**(들은 것은 적지 않음)**

누가 (행위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피해자) (해당란에 V표)		어떻게
			본인	친구	

3. 기타 성희롱·성폭력 피해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주세요.

4. **(피해자인 경우만 해당)** 피해자 보호조치를 희망합니까?(**해당란에 "V" 표**)
   ① 예 (　　)　　② 아니오 (　　)
   * 피해자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요양 등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5. **(피해자인 경우만 해당)** 작성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수사기관 및 구청 아동학대 담당팀에서 추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해당구청 아동학대 담당팀에 보관되며 조사가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와 '비동의' 해당란에 V표)

- 기록 내용 이용에 대한 동의(적으신 내용을 감사, 수사에 동의할 경우)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전화번호) : 학생 성희롱·성폭력 사안 관련 조사 (감사, 수사에 동의할 경우)	동의 □　비동의 □

- 보유·이용기간 : 조사 종료 시까지(종료 후 즉시 폐기)(전화번호 : 010-　　)

서식 1-15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 결과 (학교 통보)

※ 교육청에서 해당학교로 결과 공문발송, 단, 학교 관리자에 의한 경우 학교 미통보

1. 학교현황

학 교 명		주소	
학 교 장		전화번호	
교 감			

2. 조사일시 : 20 . . ( ), 00:00~00:00

3. 조사장소 :

4. 조사개요

가. 전체 인원 : 00명

나. 참여 인원 : 00명

다. 불참 인원 : 00명

라. 불참 사유 : 예) 결석 00명, 지각 00명

5. 조사 결과

연번	피해 일시	피해학생 (학반,성별 전화번호)	행위 교직원명 (성별)	피해내용	피해자 보호조치 희망여부
1		□-○(남) 010-1234-5678			○
2		□-○(여) 010-1234-5678			○
3		000(남)			×
4		000(여)			×

※ 피해자보호조치 미희망 시: 피해학생 이름 익명처리 (예:000)

서식 2-1-1 **비밀유지 서약서 (신고인(피해자),참고인용)**

비밀유지 서약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본인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인(피해자)/참고인)으로서 20 년 월 일에 신고 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_____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비밀유지 의무)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1-2 **서약서 (피신고인용)**

서 약 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_____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단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력 등을 위해 대리인과 동반 출석하거나 서면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2-1-3 **비밀 유지서약서 (조사위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본인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위원(사안처리지원단)으로서 20 년 월 일에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8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2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신고인, 피신고인용)**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민감정보 처리목적] 신고사건 접수 및 사건처리, 결과 회신

[민감정보 내용] 신고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고충상담원
사안처리 관련 부서 담당자

[민감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5년간 보관 뒤 해당 개인정보 파기

[민감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위 사항에 대해 고충상담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고충상담 및 사건처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3 조사 문답서 (예시)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 성사안 처리 지원 전문가(노무사/변호사)에 의해 작성됨.

☐ 소 속:

☐ 직위/직급(학생인 경우 학년 반)

☐ 이 름: ☐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학교 사안과 관련하여 20 . . 00:00 ○○학교 내 ○○(조사장소)에서 (조사자 소속 및 성명)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합니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소속, 성명, 직책을 말씀해주세요

〈답〉

2) 피신고인은 OOOO년 O월 O일 (장소) OO에 참가한 사실이 있나요?

〈답〉

3) 피신고인은 이 OO자리에서 신고인에게 ~한(자세한 사건 내용)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이때 사건내용을 자세히 먼저 묻기보다는, 간략하게 말하게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그 때 OO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답〉

5)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답〉

본인은 위의 문답내용을 (열람, 낭독)하였으며, 진술 내용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였으며,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사실확인(조사) 시간:

문답서 열람 시간: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확인자(조사위원): (서명)

입회자: (서명)

공문서식 2-4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결과 보고 표지 공문 (예시)

○○○학교/기관명

수신 *문서발송부서 참조*

(경유)

제목 학교(기관) 사안 조사결과 보고

1. 관련: *○○학교/기관 제20○○-○호*
2. 학교(기관) 사안 조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문서 발송부서

구분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업무분장
초등학교	유초등교육지원과	인성체육급식과	-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주),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부), - 담임장학사(지원)
중학교	중등교육지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	인성체육급식과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주) - 담임장학사(지원)

※ 필수 공문 발송 시 비밀유지

★ 관련 공문 열람 시 내용 누설 금지 ★



※ 문서 등록 시 보안 철저
- 문서공개여부
  비공개 (1,6호 체크)
- 기타보안
  (열람 시 암호 확인)

붙임서식 2-4

조사 결과 보고서

※ 외부전문가에게 받은 조사의견서를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 학교장 결재 후 관련부서로 제출

<table>
<tr><td rowspan="2">1</td><td colspan="2">접수번호</td><td colspan="2"></td><td rowspan="2">담당자</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접수일자</td><td colspan="2">20 년 월 일</td></tr>
<tr><td rowspan="2">2</td><td rowspan="2">피해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성별</td><td></td></tr>
<tr><td>직급
(학반)</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3</td><td rowspan="2">행위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성별</td><td></td></tr>
<tr><td>직급</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4</td><td colspan="2">신고내용요지</td><td colspan="4"></td></tr>
<tr><td>5</td><td colspan="2">진행상황</td><td colspan="4">20 .00.00. 사안접수
20 .00.00. 학교장 보고, 피해자 긴급조치, 경찰신고
20 .00.00. 교육(지원)청 보고
20 .00.00. 신고인 조사
20 .00.00. 참고인조사, 피신고인조사
20 .00.00. 성고충심의위원회 예정</td></tr>
<tr><td rowspan="2">6</td><td colspan="2" rowspan="2">긴급조치여부</td><td>피해자</td><td colspan="3"></td></tr>
<tr><td>행위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7</td><td colspan="2" rowspan="2">쟁점사항</td><td colspan="4">1. 행위자가 ~에서~~했다.
① 신고인 진술:
② 피신고인 진술:
③ 참고인 진술:
④ 증거자료:</td></tr>
<tr><td colspan="4">2. 행위자가 ~에서 ~라고 말했다.
① 신고인 진술:
② 피신고인 진술:
③ 증거자료:</td></tr>
<tr><td>8</td><td colspan="2">피해자 요구사항</td><td colspan="4"></td></tr>
<tr><td>9</td><td colspan="2">조사자 의견</td><td colspan="4">(외부전문가의견 받은 경우에 작성)</td></tr>
</table>

공문서식 2-5

성사안 종결 보고 표지공문 (조정·중재 후 사건종결 시)

○○○학교/기관명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기관) 사안 종결 결과 보고

1. 관련: *○○학교/기관 제20○○-○호*
2. 학교(기관) 사안 종결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종결동의서 및 관련 서류 1부.　끝.

※ 필수 공문 발송 시 비밀유지
★ 관련 공문 열람 시 내용 누설 금지 ★



※ 문서 등록 시 보안 철저
- 문서공개여부
  비공개 (1,6호 체크)
- 기타보안
  (열람 시 암호 확인)

붙임서식 2-5

종결 동의서 (신고인 요구사항 포함) – 신고인 및 보호자 작성

※ 조정·중재로 종결 또는 사건 접수 후 단순 종결 시 사용

※ 조정·중재는 신중하게 결정. 종결동의서 활용 시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필수

관련: ○○학교/기관 제2000-○호

○ 소 속: ○○○○학교

○ 성 명: ○○○, ○○○의 보호자

○ 연락처:

○ 종결전 단계: □ 상담 □ 조사 □ 심의

본인은 20 년 월 일( ) ○○학교(기관)에 접수된 사안의 공식적인 처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길 바라며, 본 사안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요구 사항
(예시)
- 행위자 측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 2차 피해 방지(피신고인 신분 노출 및 행위자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 ○○○에 대한 개인적인 연락 및 접촉 금지 등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학교장(기관장)

☞ 조정·중재 시 종결 동의 한 경우는 [2-5-1] 사과문 및 각서, [2-5-2] 합의서 추가 필요

붙임서식 2-5-1

사과문 및 각서 (조정 중재 시) – 피신고인 작성

※ 사과문 및 각서 작성 시 유의점(신고인과 피신고인 대면 절대 금지)

① 신고인에 대한 사과문 작성

② 사과문 작성 후 직접 전달 금지, 업무담당자가 전달, 합의서 작성 시 활용

③ 작성 자료 관련자(신고인, 피신고인) 소지 불가

※ 조정·중재는 신중하게 결정. 종결동의서 활용 시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필수

본 각서는 20 년 월 일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해 서약한 내용입니다.

☐ 사과대상:

본인은 20 년 월 일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사안에서 신고인에 대한 행위 사실을 인정합니다.

신고인에게 끼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고인에 대해 2차 가해 및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조(비밀유지의무 등)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사안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위:
이름: (서명)

붙임서식 2-5-2

합의서 (조정 중재 시) – 신고인/피신고인

※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신고인과 피신고인 대면 절대 금지, 각각 별도 일정 잡아서 진행)

① 먼저 신고인에게 피신고인이 작성한 사과문 및 각서 전달

② 사과문 및 각서에 대해 신고인의 수용여부 결정

③ 피신고인의 사과문 및 각서내용 수용 시 신고인이 합의서 작성(신고인,피신고인,소지불가)

④ 신고인이 작성한 자료를 피신고인에게 보여주고 수용 가능 시 서명받기
단,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한 경우 중재 결렬 고지

※ 조정중재는 신중하게 결정. 종결동의서 활용 시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필수

※ 합의서 관련 서류 외부유출 금지, 필요 시 본인의 작성 자료만 방문, 현장 확인

본 합의서는 20 년 월 일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건입니다.

구분	이름	소속	연락처
신고인	*○○○*		
피신고인	*△△△*		

합의내용

① △△△이 작성한 사과문 및 각서의 이행

② ○○○에 대한 개인적인 연락 및 접촉 금지

③

△△△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내용으로 사건을 1차 종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붙임 사과문 및 각서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피해자 성명 기록*

피신고인 △△△ (서명) *행위자 성명 기록*

공문서식 3-1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당사자용) – 내부결재용

※ 신고인/피신고인 대상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요청안내서는 내부결재 후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가 원하는 방법으로 pdf 형태로 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

○○○학교/기관명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발송

1. 관련: *○○학교/기관 제20○○-○호*
2.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발송대상: 신고인, 피신고인 각 1명씩
   나. 발송방법: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메일(또는 우편)로 발송예정
   다. 발송내용: 붙임 참조

붙임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각 1부. 끝.

※ 필수 공문 발송 시 비밀유지

★ 관련 공문 열람 시 내용 누설 금지 ★



※ 문서 등록 시 보안 철저
- 문서공개여부
  비공개 (1,6호 체크)
- 기타보안
  (열람 시 암호 확인)

붙임서식 3-1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학교(기관) 홍길동 귀하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의거하여 20 년 제 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년 월 일 시
   (00:00까지 ○○○○ 대기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 장소
   가. 대기장소:
   나. 위원회 운영장소:
3. 안건 *:(간단히 기록)○○○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
4. 사안개요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간략하게 작성)*

년 월 일

00학교장(기관장) (인)

참고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업무담당자(전화: OOO-OOOO)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OO학교(기관) 업무담당자 메일로 **심의위원회의 2일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면 진술서 미제출 시 기존 조사자료 및 참고자료로만 심의)

공문서식 3-2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심의위원용)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대상 공문발송(내부위원-공람 또는 공문발송, 외부위원-공문 또는 메일 발송)

○○○학교/기관명

수신 수신처 참조(위원들 소속기관)

(경유)

제목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협조 요청

1. 관련: *○○학교/기관 제20○○-○호*
2.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개최하니, 해당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년 월 일 00:00~00:00
   나. 장소: 0000
   다. 참석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교
00학교	교감		남	위원장
00학교	교사		여	위원
00학교	교사		여	위원
00 상담소	소장		남	위원
00법무법인	변호사		여	위원
00노무법인	노무사		남	위원

위원회 간사: 성고충상담원(000)

   라. 심의사항: 성희롱판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등
   마. 기타
      1)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촉장은 본 공문으로 갈음함
      2)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는 당일 배부

붙임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각 1부. 끝.

※ 필수 공문 발송 시 비밀유지 (비공개, 1,6호 체크, 열람 시 암호 확인체크)

★ 관련 공문 열람 시 내용 누설 금지 ★

붙임서식 3-2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심의위원용)**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의거하여 20 년 제 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년 월 일 시
2. 장소:
3. 안건: *피신고인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추행)*
4. 사안개요(사안 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사안번호	*○○학교/기관 제20○○-○호*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장 소	*○○교실*
사안내용	*(매우 간략하게 기록 필요)* *월 일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 이라고 말하였고, ○○○~ 이라는 행동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낌*

년 월 일

00학교장((기관장) (인)

서식 3-3 비밀유지 서약서 (심의위원용)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본인은 _____ 학교(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 년 월 일에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건에 관하여 _____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학교장(기관장) 귀하

서식 3-4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 기피신청서 (당사자용)

신청인	소속학교	직급	성명
	연락처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신청이유		

○○학교(기관)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제○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합니다.

20 . . . (서명 또는 인)

○○학교(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귀중

[참고] 해당 양식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함

서식 3-5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 회피신청서 (위원용)**

☐ 접수번호:

☐ 성명:

☐ 소속:

1. 회피를 원하는 심의안건:

2. 회피 사유:

본인은 ○○학교(기관)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회피 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학교(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귀중

참고] 해당 양식은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함

공문서식 4-1

심의결과 보고 표지 공문 (예시)

○○○학교/기관명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 관련: *○○학교/기관 제20○○-○호*
2.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2.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1부. 끝.

※ 필수 공문 발송 시 비밀유지
★ 관련 공문 열람 시 내용 누설 금지 ★



※ 문서 등록 시 보안 철저
- 문서공개여부
  비공개 (1,6호 체크)
- 기타보안
  (열람 시 암호 확인)

붙임서식 4-1-1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1. 대상사건

가. 사안번호: *○○학교/기관 제20○○-○호*

나. 신고인(피해자): *○○○*

다. 피신고인: *○○○*

라. 신고내용: *간략히 기록*

2. 의결사항

「○○학교(기관)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성희롱 · 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차피해 포함)		*성희롱 인정/불인정*
피해자 보호조치 (2차피해 방지 포함)		*심리상담 연계, 치료비, 법률 비용 지원*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신고인 조치의견	*예1) 성인지교육 대면 10시간 연수 이수* *예2) 성인지교육 대면 10시간 비대면 10시간 연수* *해당연수는 모두 이수 후 근무지 복귀*
	기관조치	*해당기관 교직원 대상 성인지교육 2시간*

20 년 월 일

○○학교(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붙임서식 4-1-2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1. 개요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00:00

나. 장소: 000

다. 안건

라. 심의위원 출결사항

- 참석위원: 0명(내부 0명, 외부0명/ 남 0명, 여 0명)

2. 사안개요

가. 당사자

1) 피해자: *○○○(직위, 나이)*

2) 행위자: *○○○(직위, 나이)*

나. 신고내용

결정사항	특이사항
"~~"발언 성희롱 해당	*피해자 보호조치권고 내용* *(심리상담 지원연계)*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 학교장, 교육(지원)청 보고

공문서식 4-2

심의결과 통지서(신고인,피신고인) 표지 공문 (예시)

○○○학교/기관명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고충심의위원회(00년-0호) 결과통보서 보고

1. 관련: *○○학교/기관 제20○○-○호*
2. 성고충심의위원회(00년-0호)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 할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성고충심의위원회(00년-0호) 결과통보서(신고인, 피신고인) 각 1부.　끝.

※ 필수 공문 발송 시 비밀유지
★ 관련 공문 열람 시 내용 누설 금지 ★



※ 문서 등록 시 보안 철저
- 문서공개여부
  비공개 (1,6호 체크)
- 기타보안
  (열람 시 암호 확인)

붙임서식 4-2-1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신고인)

□ 심의결과

성희롱 · 성폭력 판단여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대책 수립	피신고인 조치의견	
	기관 조치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고충상담창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사안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민사소송 가능함 안내)

20 . . .

○○○학교(기관)장 (인)

붙임서식 4-2-2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피신고인)

□ 심의결과

성희롱 · 성폭력 판단여부	
피신고인 조치의견	

□ 성인지감수성향상 교육 안내

- (교육시간) 시간 (20 . 00. 00.까지 이수 권고)
- (교육기관) 3곳 중에 1곳 선택하여 참석
  - ① 부산여성장애인연대성가정통합상담소(부산역 인근) ☎ 583-7735
  - ②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수영역 인근) ☎ 753-1377
  - ③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모덕역근처) ☎ 303-9622
- (교육비용) 시간당 5만원(교육생 50%, 교육청 50% 부담)
- 이수 후 이수증을 학교(기관) 성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와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학교(기관)장 (인)

공문서식 4-3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및 관련 자료 제출 표지 공문 (예시)

○○○학교/기관명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성고충심의위원회(00년-0호) 결과 및 관련 자료 제출

1. 관련: *○○학교/기관 제20○○-○호*
2. 성고충심의위원회(00년-0호)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처분 심사협의회 결과를 관련 직군의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의결과 보고서 1부
2. 회의자료 1부.
3.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4. 관련자(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조사문답서, 조사의견서 각 1부.
5. 관련자 증거자료 각 1부. 끝.

※ 공문 수신처

구분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초·중학교	교원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감사부서)	-	인성체육급식과
	일반직	-	행정지원과 (감사부서)	-	인성체육급식과
고·특수학교	교직원	-	-	감사관실	인성체육급식과
모든 학교급별 공무직 등		-	-	감사관실	인성체육급식과

※ 용량초과인 경우 해당부서 업무담당자 메일 전송 가능

※ 필수 공문 발송 시 비밀유지 (비공개, 1,6호 체크, 열람 시 암호확인 체크)

★ 관련 공문 열람 시 내용 누설 금지 ★

공문서식 4-4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표지 공문 (예시)

※ 재발방지대책은 학교는 공문으로, 기관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 시스템 가입 및 관리방법은 p.26~27 확인

○○○학교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학교 사안 재발방지대책 보고

1. 관련: *○○학교/기관 제20○○-○호*
2. 학교 내 사안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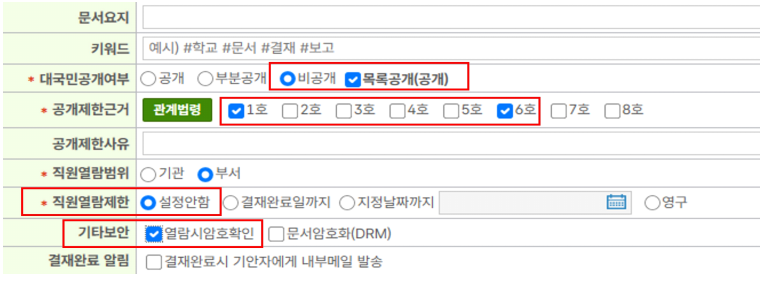
붙임 재발방지대책 1부. 끝.

※ 성희롱·성폭력사건 재발방지대책: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단,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로 사건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는 생략할 수 없으며,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공문 수신처

구분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여성가족부
교원	초·중학교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인성체육급식과	여성폭력방지과
	고·특수학교	-		
직속기관(도서관)		-		

※ 필수 공문 발송 시 비밀유지
★ 관련 공문 열람 시 내용 누설 금지 ★



※ 문서 등록 시 보안 철저
- 문서공개여부
  비공개 (1,6호 체크)
- 기타보안
  (열람 시 암호 확인)

붙임서식 4-4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학교)

* 엑셀서식으로 제출 가능

담당자(직급)	000 부장
연락처	000-000-0000

■ 사건 개요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통보 여부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여부	□ 통보 □ 미통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유	□ 피해자 의사 □ 착오·누락 □ 기타 (사유)
시점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 특정일 (날짜 20**-00-00) □ 특정기간 (20**-00-00 ~ 20**-00-00) □ 특정불가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00-00)
	○재발방지대책 제출일 ※ 사건 인지일부터 3개월 이내	날짜 기재 (20**-00-00)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사건발생기관 유형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 해당 □ 미해당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 1인, □ 2인 이상) 피해자(□ 1인, □ 2인 이상)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유형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 기관장-하급자 □ 상급자-하급자 □ 하급자-상급자 □ 동료 □ 교사-학생 □ 학생-교사 □ 학생-학생 □ 기타 ( )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 남성-여성 □ 여성-남성 □ 남성-남성 □ 여성-여성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여부	□ 신고(신고일 날짜 :) □ 신고 예정 □ 미신고 - 미신고 사유 선택 : □ 피해자 의사 □ 기타 □ 해당없음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사항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유형상담, 신고 및 조사	○사건 조사 신청서 접수일	날짜 기재 (20＊＊-00-00)
	○사건 조사 기간(신청서 접수일부터)	□ 20일 이내 □ 30일 이내 □ 30일 초과 (일)
	○사건 조사 방식	□ 기관(고충상담원, 조사위원회 등) □ 외부전문가 조사 □ 인권위 조사 □ 상급기관 조사
	○조사 진행 상황 피해자 고지 여부	□ 고지 □ 미고지
	○사건 수사기관 수사 여부	□ 해당 □ 미해당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심의 ※학폭위·교권위를 개최한 경우 해당내용으로 작성요망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개최 □ 학폭위 또는 교권위 개최 □ 미개최 (사유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 참여 □ 불참(사유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 인정 □ 불인정 □ 타비위 행위로 판단 □ 기타(구체적 사항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2차 피해 해당 여부	□ 인정 □ 불인정 □ 해당없음
	○이외 의결 내용(복수 체크 가능)	□ 피해자 보호 조치 권고 - □ 공간분리 □ 유급휴가 □ 배치전환 □ 기타 (기재) □ 해당없음
		□ 행위자 조치 사항 권고 - □ 징계 □ 근무장소 변경 □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 기타 (기재) □ 해당없음
		□ 2차 피해 예방 또는 중지 (구체적 사항 기재)
		□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조치 사항 (구체적 사항 기재)
	○심의결과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통지 여부	□ 통지 □ 미통지

구분	내 용	응답값
후속 조치 * 예정인 사항도 포함	○피해자 조치 사항 (복수 체크 가능)	□ 행위자와 공간분리 □ 유·무급휴가 □ 심리상담 □ 상담/의료/법률 지원기관 연계 □ 해당없음
	○행위자 조치사항 (복수 체크 가능)	□ 징계 □ 부서/근무장소 변경 □ 업무배제/대기발령/직위해제 □ 인식개선 교육 □ 상급기관에 행위자 인사조치 요청 □ 해당없음
	○2차 피해 방지 등 기타 조치사항	(구체적 사항 기재) 예) 전직원 폭력 예방교육 실시 2차 피해 방지 홍보 강화

■ 재발방지 강화 방안

구분	내 용	응답값 (최근 1년 기준 현황)	응답값 (사건 계기 개선 계획)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 수립(날짜 기재) □ 미수립	□ 개선방안 있음(계획 별첨) □ 없음(세부 기재)
	○예방교육 실시/횟수	□ 실시(몇 회) □ 미실시	□ 개선방안 있음 □ 없음(세부 기재)
	○직원 참여율	□ 90% 이상 □ 80~90% □ 70~80% □ 70% 미만	□ 개선방안 있음 □ 없음(세부 기재)
	○기관장 참여	□ 참여(총 0회 중 0회) □ 불참	□ 개선방안 있음 □ 없음(세부 기재)
	○고위직 참여율(%)		□ 개선방안 있음 □ 없음(세부 기재)

구분	내 용	응답값 (최근 1년 기준 현황)	응답값 (사건 계기 개선 계획)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개정	□ 있음 (수립시기 기재) □ 없음	□ 개선방안 있음(지침 별첨) (세부 기재)
	○고충상담원 지정	□ 지정(여 0명 , 남 0명) □ 미지정	□ 개선방안 있음 □ 없음(세부 기재)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 이수 □ 미이수	□ 개선방안 있음 □ 없음(세부 기재)
	○고충상담창구 설치	□ 설치 □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 없음(세부 기재)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종사자 30인 이상일 경우)	□ 설치 □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 없음(세부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 상설 □ 비상설 □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 없음(세부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총 0명) (내부 0명, 외부 0명) (여성 0명, 남성 0명)	□ 개선방안 있음 □ 없음(세부 기재)
	○기타 개선 계획 (해당될 경우 기재)		자율 기재 예) 실태조사 실시, 컨설팅 실시, 징계양정 강화 등

※ 유치원은 기관 내 성폭력 사건만 해당
※ 각급학교 엑셀 대장을 함께 공문으로 제출
※ 최근 1년 기준 현황은 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 참고, 학생 간 사안의 경우 '기타 개선 계획' 란 중심으로 작성 요망
※ 본 서식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 서식으로, 각급 학교 내 사건에 대해 학폭위·교권위 등을 개최한 경우 해당 내용으로 작성 요망

서식 4-5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

<table>
<tr><td colspan="2">학교명</td><td colspan="2"></td><td>담당교사</td><td>성명</td><td></td></tr>
<tr><td colspan="5"></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신청 부문 및 인원</td><td colspan="3">☐ <u>교직원 대상</u>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td><td colspan="3">총 교직원수(　　) - 남(　) 여(　　)</td></tr>
<tr><td colspan="3">☐ <u>학생 대상</u>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td><td colspan="3">희망 학년(　　) 희망 학급수(　　)</td></tr>
<tr><td rowspan="2">희망 주제</td><td>교직원 대상</td><td colspan="5">※ 교육청 개발 자료 활용 연수</td></tr>
<tr><td>학생 대상</td><td colspan="5">☐ 성희롱·성폭력 예방 ☐ 성매매 예방 ☐ 디지털성범죄 예방
☐ 스토킹 예방 ☐ 기타(희망주제:)</td></tr>
<tr><td rowspan="3">희망일시</td><td>1순위</td><td colspan="5">월 일 교시 (00:00~00:00)</td></tr>
<tr><td>2순위</td><td colspan="5">월 일 교시 (00:00~00:00)</td></tr>
<tr><td>3순위</td><td colspan="5">월 일 교시 (00:00~00:00)</td></tr>
<tr><td>사안 내용</td><td colspan="6">※ 요청 사유 간단히 기록</td></tr>
<tr><td>기타 사항</td><td colspan="6"></td></tr>
</table>

위와 같이 학생 대상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신청합니다.

20 . 00. 00.

○○○학교(기관)장

서식 4-6 행위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서 (교직원)

※ 교육비 50% 지원

※ 해당학교(기관)에서 연수운영기관으로 제출

기관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대상자 연락처	직위			
	성명			
	성별			
	연락처			
요청시간	*15시간*	희망일	*희망요일 등이 있으시면 기재 없으면 빈칸*	
사안 내용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위와 같이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및 상담을 신청합니다.

20 . . .

○○○○장 귀하

서식 4-7 행위학생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상담 신청서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00% 지원, 그 외 50%지원

※ 해당학교(기관)에서 연수운영기관으로 송부

학교명			**교감**	성명	
				전화번호	
담당교사	성명		전화번호		
대상자 정보	성명		성별		
	학반		연락처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사안 내용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담당자 확인사항	1. 보호자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2. 보호자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학생 성인지감수성 향상 상담 및 교육을 신청합니다.

20 . . .

○○○○장 귀하

서식 4-8 행위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기관용)

※ 행위자 교육 후 연수기관에서 발행, 해당기관에서 교육청으로 송부

1. 실시 기간 : 20 년 O월 OO일(O)~O월 OO일(O)
2. 교육 시간 : OO시간, 총 OO일
3.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의뢰기관명			
교육 대상			
교육강사명		소속기관 (직위)	
교육 시간	총 시간(※ 점심시간 제외)		
교육 내용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7차시		
	8차시		
	9차시		
	10차시		
교육생 참여도 및 특이사항			

20 . . .

강사명 (서명)

교육기관명 (관인)

서식 4-9

행위자 성인지감수성향상 교육 이수확인서 (교육기관용)

※ 행위자 교육 후 연수기관에서 발행, 해당기관에서 교육청으로 제출

1. 교육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연 락 처	
주 소			

2. 교육 내용

교육기관명		강사명	
교육시간	총 OO시간 (※ 점심시간 제외)		

3. 교육 이수 확인

교육일(요일)	시작~종료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생 서명
20 .00.00.(O)	09:00~12:00 (3시간)		
합계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육기관명) 관인

참고자료 1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예시)**

○ 일시 : 20 . 00. 00.
○ 장소 :
○ 참석대상 : 00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 순 서 -

○ 참석자 소개(간사)
○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위원장)
○ 사안조사 결과 보고(간사)
○ 피해자 사실 확인 및 요구 의견 진술
○ 행위자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
○ 위원회 논의
○ 폐 회

Ⅰ 추진배경

○ 근거 : 20 년 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여성가족부, 20 . 1)
00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20 . 00)

○ 00-00간 성희롱 사안접수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이하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Ⅱ 성고충심의위원 명단 및 역할

□ ○○학교(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위원회 직위	성별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간사: 000

□ 성고충심의위원회 역할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 보호조치,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심의

Ⅲ 성희롱·성폭력 고충사안 조사결과 [서식2-4]

1	접수번호			담당자	
	접수일자		20 년 월 일		
2	피해자	성명		성별	
		직급 (학반)		전화번호	
3	행위자	성명		성별	
		직급		전화번호	
4	신고내용요지				
5	진행상황		*20 .00.00. 사안접수* *20 .00.00. 학교장 보고, 피해자 긴급조치, 경찰신고* *20 .00.00. 교육(지원)청 보고* *20 .00.00. 신고인 조사* *20 .00.00. 참고인조사, 피신고인조사* *20 .00.00. 성고충심의위원회 예정*		
6	긴급조치여부	피해자			
		행위자			
7	쟁점사항		*1. 행위자가 ~에서~~했다.* *① 신고인 진술:* *② 피신고인 진술:* *③ 참고인 진술:* *④ 증거자료:*		
			2. 행위자가 ~에서 ~라고 말했다. *① 신고인 진술:* *② 피신고인 진술:* *③ 증거자료:*		
8	신고인 요구사항				
9	조사자 의견		*(외부전문가의견 받은 경우에 작성)*		

Ⅳ 성희롱 관련 쟁점 사항

쟁점1 **ooo 언급/행위 여부**

■ 피해자 진술

[00.00.00. 진술서]

■ 참고인 진술(목격자, 고충을 들은 사람 등, 없으면 생략)

[00.00.00] 통화내용/목격내용/들은내용 등

■ 행위자 진술

[00.00.00.] 문답서

✔ ~ 접촉이 있었다 vs 아니다/기억이 없다
~ 발언을 했다 vs ~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는 했다
※ 대립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

V 위원회 협의 내용

1. 행위자의 성희롱 여부 판단
2. 피해자 보호조치 의견
3. 재발방지대책 의견
4. 기타 의견

붙임 1. 피해자(신고인) 성희롱 고충접수서 1부
2. 피해자(신고인) 조사서/진술서 1부
3. 행위자(피신고인) 문답서 1부
4. 행위자 1차 서면진술서 (대면출석 안될 경우)
5. 행위자 2차 서면진술서 및 추가 진술 등 (대면출석 안될 경우) 등
제출된 자료 일체 첨부

참고자료 2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나리오 (예시)

1. 개회 안내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00조에 의거하여)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학교(기관) 성고충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 사) 안녕하십니까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간사 000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심의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위원 소개)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 주십시오. (간 사)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0조 및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 학년도 제 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간사는 위원회의 개요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되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간 사) 성고충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000을 위원장으로 총 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부 전문위원 0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희롱 여부(2차 피해 포함)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셋째, 성희롱 재발방지(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에 관한 사항 등 -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시면 당사자(신고인)에게 통보 후 학교(기관)장은 성희롱 재발방지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 위원님들께서 성희롱 사안으로 심의하시면 학교(기관)장에게 심의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내립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는 고충심의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위원장) 간사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안건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고인의 성희롱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안건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안내 (필요시)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기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 사) 제척, 기피, 회피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조(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의거하여,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피대상이 된 위원을 제외한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기피가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신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척, 회피 시 위원 정족 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척, 기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함
주의사항 전달	(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각각의 성희롱 · 성폭력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상황을 이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의 조치 결과를 다른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이 제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인·피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심의자료는 심의가 종료된 후 간사가 수거하여 폐기합니다.	

2. 사안 보고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전담기구 사안 보고 쟁점, 질의	(위원장) 다음은 사안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는 사안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는 사안의 경과 및 사안의 내용, 조사문답서,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의견서 등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조치결정을 위해 관련자에게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사안보고 ▶ 사안번호 20○○-00 건의 경과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기구 조사결과 보고서를 정리하여 보고) ▶ 20○○. 00. 00. 사안 접수하여, ~~~ ※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사안개요, 진행상황, 중점심사 사항 등) ☞ 기초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A 및 B가 모두 인정한 사실)은 ~ 이며, ☞ A 및 B의 상반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 - B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 ☞ 기타 진단서, 문자내용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자료]의 쟁점사항을 숙지할 시간을 10분 정도 갖겠습니다. **[10분 후]** 위원님들께서는 조사 보고서, 심사자료 등 관련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쟁점 사안과 관련 학생·보호자 질의·응답 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쟁점과 논의사항 협의) (위원장) 주요 쟁점 사안은 (　　)으로 요약됩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관련자 질의·응답 시에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인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질의응답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피해 측 질의응답 및 학생과의 관계(보호자여부) 확인	(위원장) 먼저 신고인측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신고인을 입장시켜 주세요. (신고인 입장) (위원장) 본 사안으로 상심이 크셨을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인 응답) ○○학교(기관) ○○○입니다.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기피신청과 유의사항 안내	(간 사)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고충심의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신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설명 및 사실여부 확인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사안에 대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피해자) 진술]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조하거나 강압 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피해 관련 측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보호자 대리 진술가능, 단, 조력인 대리진술 불가능 ※ 변호인 진술 가능
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신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나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피해 관련 측의 귀가 안내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정회 가능

4. 피신고인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질의응답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피신고인측 입장	(위원장) 다음은 피신고인측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피신고인을 입장시켜 주세요. (피신고인 입장) (위원장) 본 사안으로 피신고인께서도 많이 놀라시고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신고인) ○○학교(기관) ○○○입니다.	피신고인측 회의장소 입장
기피신청과 유의 사항 안내	(간 사) 먼저,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함.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설명 및 사실여부 확인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피신고인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피신고인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신고인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위사실 확인 (특히 양측의 주장이 대조적인 경우 사실관계확인)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행위 관련 측 입장 표명 및 요구 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력인 대리진술 불가능 ※변호인 진술 가능
사후 과정 및 불복 절차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피신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와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신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피신고인 측의 귀가 안내

5. 참고인 진술 (필요시)

※ 조치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참고인 질의응답	(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간사는 참고인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입장) (위원장)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학교(기관) ○○○입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과의 질의 응답)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이 없는 경우]** (간 사) 이 사안에 대한 참고인으로 000와 000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0명 모두 오늘 이 자리 참석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자료 0쪽]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및 사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사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 많은 경우 순차적으로 입장

6. 심의의결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성희롱 성폭력 여부 심의	(위원장) 먼저 성희롱 사안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활용 시)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안별로 자유로이 토론 후 기 배부 해 드린 투표용지에 성희롱 해당여부를 기표하여 성희롱 해당여부를 결정짓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희롱해당 / 성희롱 미해당]** **신고인의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성희롱 여부 논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 20○○-01건에 000교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피신고인이 행한 신고인에 대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 20○○-01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피신고인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고인에게 행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신체 및 정신 상 피해를 유발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논의 가능

7.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논의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피해자 보호조치 의결	(위원장) 피해자 보호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공간분리, (교직원의 경우 휴가), 법률상담 지원, 결과에 따른 관련자 전보조치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신고인(피해자)의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상호 논의) (위원장) 신고인(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00조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조치(가급적 기간 명시)를 의결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의결	(위원장) 다음은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신고인에 대한 성인지감수성향상 교육(15~30시간 결정)시간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서 어느정도 하면 좋을까요? 모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실시해도 됩니다. (위원들 간 상호 논의) (위원장) 다음으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는 관련 기관(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컨설팅 신청, 2차 피해(가해) 혹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조직문화 개선 및 성인지감수성 함양을 위한 워크숍 실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여 판정. 최종적으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
마무리	(위원장) 그럼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20○○-01호 사안의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 성희롱 해당으로 결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조치와 행위자 성인지교육은 대면(비대면) 00시간으로 하되 근무지 복귀 전 이수하도록 하며, 재발방지대책으로 --------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지만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자가 요청한다면 ----조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성고충사안은 조금 전 결정 내용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00위원과 00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해당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Ⅳ 부 록

1.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안
2. 피해지원기관
3. 학교(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사안 사례
4. 성사안 처리에 대한 판례 및 결정례
5. 성사안 처리 관련 법령
6. 성고충심의위원회 외 성사안 구제 외부기관 안내

1.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안

디지털 성폭력 개요

■ 정의

○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

○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폭력 가능

○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는 인터넷 SNS, 메신저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한 피해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넓은 특징이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큼.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뜻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진짜처럼 보이게 편집할 수 있어, 실제와 유사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당장 알아차리기 어려움

○ 불법촬영(합성)물이 인터넷의 공연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유포·재유포 될 가능성 높음

○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합성)물은 삭제 및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회복 어려움

■ 디지털 성폭력 유형

구분		적용법률	예시
촬영물 이용 성폭력	비동의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화장실 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또는 성행위 장면 등을 직접 촬영

구분		적용법률	예시
	촬영물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하에 촬영된 성적인 촬영물을 비동의하에 유포 - 비동의하에 촬영된 성적인 촬영물을 비동의하에 유포 - 스스로 찍은 성적인 촬영물 유포 -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적인 촬영물을 다운로드 후 재유포 -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하여 유포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또는 공공연히 전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불법 합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024.10.16. 개정)**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능욕) -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영상)합성물 -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 -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 - 성적인 촬영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
	유포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형법」 제283조, 제324조	- 연인 간 이별 시, 혹은 이별 후 성적인 촬영물 유포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인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성적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 다고 협박
	소비, 유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92조, 제96조, 제104조	- 비동의 성적인 촬영물의 구입·소지·저장·시청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 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2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제71조 1항 1호**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 온라인 성적 그루밍(가해자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 신뢰를 얻어 오프라인상에서 성착취)**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원하지 않는 언어적 성희롱 및 이미지 전송 -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 게시 - SNS 단체대화방 내 성희롱

디지털 성폭력 신고 및 대처 방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영상물, URL 등의 증거확보
*** 증거확보 후 개정 비공개, 텔레그램 탈퇴**

112(117) 신고, 1366 상담
www.women1366.kr/stopds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이젠센터) 영상 삭제요청

○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 성폭력 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 의료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디지털 성폭력 피해 도움 청할 수 있는 곳

○ 수사기관 신고(☎ 112) 및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 117)
○ 여성 긴급전화 (☎ 1366)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1-802-2082)

■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SNS 개인사진 게시 및 프로필 공개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않기

○ 또래 친구와 불법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관여하지 않도록 딥페이크 위험성을 공유하고 법적 위법성에 대한 책임과 처벌 인식하기

○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온라인 기본 예절 강조하기

디지털 성폭력 발생? Q&A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젠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담지원 : 관련 문의 응대 / 지원내용 안내 /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삭제지원 : 피해촬영물 등 삭제지원 / 유포 현황 모니터링 /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연계지원 :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지원 / 의료지원 및 심리치유지원 연계 /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삭제는 무료인가요? 얼마만큼 삭제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삭제지원은 **무료입니다.**
지원시작 후 **한달 주기로 3개월간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삭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1년 주기**로 연간 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시기, 유포 ID)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삭제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이젠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관계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자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촬영에 동의한 것이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하지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인정보·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 및 자료의 보안 차원에서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사이트는 또 다른 유포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지원기관

성희롱·(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행위자 교육기관 현황

순	소 속	연락처	주 소	지원내용	행위자 교육
1	경찰	국번없이 112	각 구별	성폭력피해신고	×
		899-2548	지방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	장애학생, 13세 미만 사건	×
2	동부해바라기센터	501-9117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지하1층	성폭력 · 성매매 · 아동학대 · 가정폭력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 등	×
3	부산해바라기센터	244-1375	서구 구덕로 187 융합의학연구동 3층	성폭력 · 성매매 · 아동학대 · 가정폭력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지원 등	×
4	이젠센터 (부산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66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부전1동)	**24시간 상담** 상담, 보호시설 연계	×
	이젠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802-2082		**자치경찰 상주, 원스톱지원디지털성범죄 긴급지원**	×
5	(사)부산성폭력 상담소	558-8833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 허브스카이 A3동 06호	상담의료 및 수사지원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6	(사)부산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817-4344	부산진구 가야대로607	상담의료 및 수사지원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7	강서 가족상담센터	204-8896	강서구 명지국제 2로	상담의료 및 수사지원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8	**(사)부산여성장애인 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583-7735**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초량동) 부산장애인종합회관 4층**	**상담, 의료 및 수사지원연계, 법률,심리지원 등**	○
9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753-1377**	**수영구 연수로 392(광안동)**	**상담, 의료 및 수사지원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10	**부산광역시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303-9623/ 9626**	**사상구 모덕로 82 (덕포동)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전문멘토 연계**	○

3. 학교(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사안 사례

※ 자료출처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2021년 교육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례 1

■ 다수의 학생이 익명으로 피해 호소

1. **피해자** : 다수 학생(여)
2. **가해자** : 교사(남)
3. **피해유형** :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사안개요]

- SNS에 학생들의 성희롱 피해 폭로 글이 게시됨. 가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슴을 치고 "풍만하네"라는 말을 하고, 여학생들에게 신체접촉 함.

[사안처리과정]

*** 접수**

- 가해자가 다수 학생을 상대로 성적 발언 및 신체접촉을 한 내용이 SNS에 공론화됨. 교직원 및 학교장은 가해자의 행위를 인지하여 이후 과정에 착수함.

*** 조사 및 심의**

-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함. 피해 학생이 특정되지는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음.

*** 징계 및 관련 조치**

- 가해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고, 학교장이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과함.

*** 사안 이후**

- 전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

권고사항

- SNS를 통한 공론화이더라도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시행하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실명을 밝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전수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사실만으로도 가해자는 특정될 수 있으므로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교사일 경우 정식 절차 전이라도 인지 즉시 가해자에 대한 수업·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학생)가 보호 조치를 희망할 경우,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 익명 신고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다수로 파악되는 SNS 공론화의 특성상 피·가해자가 명확할 때 보다 사안을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 발생 시 초동대응이 미흡하면 사안처리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성폭력전문상담소,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돼야 하는 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반별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제 제기가 정당하고 용기 낸 행동이었음을 격려하고, 학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안처리 진행 상황을 학생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에 대해 공유하고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표명할 때 학생들이 학교를 보다 신뢰하고 원활한 사안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게 어렵다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과 공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학교 구성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의무자(제34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안 조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 사안처리가 일단락되었다면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서 토론회를 마련한다거나, 상호 간 규약 등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으로 학교 및 교원과 학생, 학부모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검찰의 처분이 나온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으므로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기관 내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는 그 증거의 증명 정도가 다르며 각각 독자적인 절차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관련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사례 2

■ 사안처리 담당자가 피해 호소

1. **피해자** : 성고충 상담원(여)
2. **가해자** : 교원(남)
3. **피해유형** :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사안개요]

- 성고충상담원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지속해서 방문하여 성적 발언 및 신체접촉을 함. 또한 피해자의 몸을 훑어보면서 몸에 대하여 평가하는 말을 함.

[사안처리과정]

*** 신고 전**

- 피해자가 동료 교사들에게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고 고통을 호소함. 동료 교사가 학교장에게 가해자의 행위를 알림. 학교장은 피해자에게 당사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권고 외에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음.

*** 접수**

- 가해자의 불쾌한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이 지속되자 피해자는 학교 성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사안을 접수함. (피해자가 교내 유일한 성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안을 접수함)

*** 조사 및 심의**

- 피해자는 공식적인 사안처리 절차를 원했으나, 비공식적으로 교장실에서 교장, 피해자, 가해자가 모인 자리에서 가해자가 사과문을 제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고 사안이 종결됨.

*** 사안 이후**

- 피해자는 상급기관(교육청)에 사안을 신고했고,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됨.

권고사항

- 교내 성고충상담원이 성희롱 사안의 당사자일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상담·신고 창구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및 성고충상담원 관련 사건은 상급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거나, 별도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지역 내 성폭력상담소 또는 고용평등상담실과 같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안처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 간 성희롱 사안에서 피해자가 성고충상담원인 경우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고충상담원이 피해를 호소하였을 경우 학교에서는 즉시 업무를 조정하고 사안처리 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가 학교 성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사안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절차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성고충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같은 사안처리는 피해자의 접수 신청 시점에서 개시되어야 합니다. 기관은 피해자가 사과를 원할 경우, 이에 대한 가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어떤 방식(구두 또는 서면, 비공개 또는 공개 등)으로 사과 받기를 원하는지 질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구체화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감경을 위하여 가해자의 사과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일방적인 사과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징계 감경 사유가 아닌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 행위가 주로 피해자의 업무공간에서 발생한 상황이고 사안이 접수된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개최 시 함께 고려 되어야 합니다. 성고충상담원은 가해자 조사 시 가해자에게 이러한 행위가 향후 징계절차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는 가해자의 연락 시도가 이뤄진다면 해당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사례 3

■ 기관장 또는 임원이 가해자인 사례

1. **피해자** : 교사(여)
2. **가해자** : 학교장(남)
3. **피해유형** :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사안개요]

- 학교장이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함. 그러다가 교장실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함.

[사안처리과정]

*** 신고 전**

- 성고충상담원과 교감이 피해자와 상담 후 절차안내를 함.

*** 접수**

- 피해자가 교육청에 신고함. 성고충상담원이 가해자에게 신고 접수 고지 및 피해자와 대면 금지 조치를 함. 사안 인지 후에는 가해자 분리 조치가 아니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병가를 냈으면 좋겠다고 권유함.

*** 조사 및 심의**

- 사안을 이관하여 상급기관인 교육청이 조사함.(피해자 상담 및 조사 ⇨ 목격자 조사 ⇨ 가해자 사실관계 확인 ⇨ 해당 학교 방문 면담)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진행하여 성희롱 성립으로 판단함. 그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기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가 유보됨.

권고사항

- 학교장이 가해자일 경우 본 사안과 같이 상급기관을 통한 사안처리가 적절합니다.

* 참고: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2025년)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②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 학교장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직급(교감)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상황(예를 들면 학교장 부재 사유)을 설명하고 피해자 색출 및 소문 유포와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를 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 기관 내 징계와 형사처분은 취지가 다르고 기관의 징계권 행사가 형사절차 결론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절차(형사고소)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점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사안을 완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형사처분에 따르기 위해 징계 조치를 보류할 경우, 사안처리 장기화에 따른 학교장 부재 및 직무대행체제가 장기화하여 업무 차질 및 불안감 조성 등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피해자가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어 2차 피해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부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단, 이는 가해자를 복귀시키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 4

■ 하급자가 상급자(부장교사)에게 성희롱

1. **피해자** : 교직원(여) 다수(부장교사)
2. **가해자** : 교직원(남)
3. **피해유형** :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사안개요]

- 가해자는 피해자들보다 경력이 낮은 교사임. 가해자는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동료들에게 원치 않는 불쾌한 성적 언동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지속함. 회식 후 노래방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았다 가라는 발언을 하거나 손을 잡음. 또한,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애인으로 사귀면 안 되냐'는 발언을 함. 이외에도 여성 직원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냄.

[사안처리과정]

*** 접수**

- 피해자들이 학교 내 성고충상담창구에 가해자를 신고함.

*** 조사 및 심의**

- 학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처리할 수 없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그것을 학교에서 준용 해 사안처리를 하겠다고 함. 가해자는 별도의 업무공간으로 이동 배치되었지만, 업무공간에서 지속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마주치는 등 실질적 공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함. 경찰에서 해당 사안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함. 이후 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접수함. 교육청에서는 검찰 기소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함.

*** 사안 이후**

- 피해자는 이 사안을 외부기관에 진정함.

권고사항

- 조직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징계 절차 과정을 형사처벌 여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처럼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성희롱이 동반된 경우, 형사고소 절차는 신체접촉과 같은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언어적 성희롱 건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에서의 '신체적 성희롱'과 형사법상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은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추행이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해자는 신고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다수의 여성 동료들에게 성희롱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 내에서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전수조사 결과 다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것을 피해 사실관계 확정에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하급자라고 하여 업무상 위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이·경력·성별 등 조직 내 다양한 위력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위 사례에서는 공간 분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공간 분리는 신고 직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휴가를 쓰게 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시키거나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근무 장소의 경우에는 업무 배제 등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 분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같은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근무한다면, 결재라인 변경, 회의참석 명단 조정, 식사 시간 조정 등 으로 업무상 만나는 빈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 5-1

■ 동성 간 성희롱

1. **피해자** : 남교사
2. **가해자** : 남교사
3. **피해유형** : 신체적 성희롱

[사안개요]

-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신체접촉을 반복함.

[사안처리과정]

*** 접수**

- 피해자는 학교 내 성고충상담창구에 신고 접수 후 공간 분리를 요청했으나 동성 간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구성원들의 인식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해자는 이후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그래도 공간 분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는 병가와 연가를 반복하여 학교 내에서 스스로 공간 분리를 하려고 시도함. 그동안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조사 및 심의**

-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으로 일부 인정되었으나 이후 가해자도 피해자를 역으로 학교 성고충사안으로 접수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함. 한편 피해자의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며 피해자는 공간 분리 등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함.

사례 5-2

■ 동성 간 성희롱

1. **피해자** : 여교사
2. **가해자** : 여교사
3. **피해유형** :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사안개요]

- 가해자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야하다'고 평가하거나, 피곤해 하는 피해자에게 '야동 보고 왔냐'고 함. 가해자는 이러한 발언 외에도 친분을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짐.

[사안처리과정]

*** 신고 전**

-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해자의 사과를 요청하여 공개 사과를 하는 자리가 마련됨. 가해자는 본인의

행위가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변명을 함. 이에 피해자가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동성 간의 사안이라는 이유로 처리되지 않음. 가해자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행동을 지속하였으며,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전화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학교 측에 가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함.

*** 접수**

- 피해자가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

*** 조사 및 심의**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이 인정됨.

*** 사안 이후**

- 그러나 학교장이 피해자에게 사안에 대한 무마를 요구하면서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한편, 상급기관 또한 사건처리를 미루면서 피해자에게 취하할 것을 강요함.

사례 5-3

■ 동성 간 성희롱

1. **피해자** : 여학생
2. **가해자** : 여교사
3. **피해유형** : 언어적 성희롱

[사안개요]

- 가해자는 체육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몸매를 언급하는 발언을 함. 남자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남자에게만 잘 보이려고 한다”라고 비난함. 피해자는 가해자의 발언을 듣고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낌.

[사안처리과정]

*** 신고 전**

- 피해자는 담임교사에게 사안을 알렸고 담임교사가 가해자에게 내용을 전달함.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를 기대했으나,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음.

*** 접수**

- 피해자는 학교장에게 사안을 알렸으나 학교 측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함.

*** 조사 및 심의**

- 교육청으로부터 민원을 전달받은 학교는 신고 접수를 하였고,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됨.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진행되었으며 가해자의 발언은 정상적인 교육 차원의 지도였다는 의견이었다며 성희롱 불성립 판단을 함.

3가지 사례에 대한 권고사항

- 동성 간 성희롱 사안일 경우 피해자가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쉬우나 동성 간에 발생한 원치 않는 불쾌한 성적 언동도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공식 절차에 따른 사안 조사 처리 및 피·가해자 공간 분리와 같은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성 간 성희롱 사안이더라도, 이성 간 성희롱 사건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사안이 접수가 된 이후에는 피·가해자 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만일 사례 1처럼 사안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역진정'이 발생 할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8년 대검찰청이 성폭력 고소 사안에 대한 무고 수사 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2018. 5. 11.) 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의 경우 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으로 인정됐음에도 학교장과 상급기관이 사안 무마를 시도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장과 상급기관의 2차 가해 행위를 별도의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의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의 발언이 정상적인 교육 차원의 지도였다는 의견이 우세한 배경에는 동성 간 사안이라는 측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성별이라고 해서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하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지원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성폭력 피해 지원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6

■ 학교 업무관계 범위에 있는 대상

1. **피해자** : 교생(여)
2. **가해자** : 교사(남) 피해자의 담당교사임
3. **피해유형** : 언어적 성희롱

[사안개요]

- 교생이었던 피해자는 실습 기간 동안 실습을 담당하는 교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및 성적 발언을 듣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당함.

[사안처리과정]

*** 접수**

- 피해자는 실습생의 신분으로 해당 학교에 문제 제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상급기관에 신고함.

*** 조사 및 심의**

- 가해자는 다른 비위 사안으로 이미 별건의 신고로 인해 조사 중인 상태였음. 그리고 학교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안을 인지한 시점은 실습 기간이 지난 후였음. 피해자의 실습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을 받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함.

권고사항

- 학교 성희롱 문제는 고용관계 또는 교습관계의 문제로 한정되어 인식되기 쉬우나 성희롱 문제에서의 노동권과 학습권의 문제를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인과 관계를 맺게 되는 학교에서 교생처럼 일반적인 고용관계로 정의할 수 없는 외부인이 연관된 성희롱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특히 실습 교생의 경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으나 성희롱 문제에서 간과되기 쉬우므로 교생에 대한 성희롱 발생 시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습 전 교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상담 및 신고 창구를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생들의 소속 대학의 학내 인권센터, 성폭력상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성희롱 예방 또는 사안 발생 시 대처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비위행위 조사과정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별도로 조사하여 심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례 7-1

■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사안접수가 안된 경우

1. **피해자** : 신입교사(여)
2. **가해자** : 경력교사(남)
3. **피해유형** : 언어적 성희롱 및 교제, 사적 만남 강요

[사안개요]

- 50대의 교사가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여성 교사들을 상대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함.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애관계에 대해 질문하거나 출산에 대해 발언을 하기도 함.

[사안처리과정]

*** 신고 전**

- 피해자가 교감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함. 교감이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학교장이 가해자에게 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가해자는 행위를 일부 부인함. 학교 측에서는 가해자에게 구두 경고만으로 사안처리를 끝냄. 이후 가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출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과 접근을 지속함.

*** 접수**

- 피해자는 외부기관에 사안을 진정함.

*** 조사 및 심의**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및 현 가해자 소속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 징계 및 관련 조치**

- 교육(지원)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 시행됨.

사례 7-2

■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사안접수가 안된 경우

1. **피해자** : 기간제 교사(여)
2. **가해자** : (1) 기간제 교사(남) (2) 기간제 교사(남)
3. **피해유형** : 언어적 성희롱 및 사적 만남 요구

[사안개요]

- 가해자 1은 피해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약속을 잡으려고 하거나 여행을 가자고 하는 등 지속해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함. 가해자 2는 여성 기간제 교사들만 모인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1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해자 1에게 전달함.

[사안처리과정]

*** 신고 전**

- 피해자는 학교장에게 가해자 1과 2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음. 피해자가 교직원 회의 시간에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장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함. 이후 학교장이 피해자와 가해자 1, 2를 소집하여 사안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나 관련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음. 오히려 학교 측에서 피해자에게 법적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학교 분위기를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고함.
- 가해자 1은 다른 학교로 이직 후,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였음. 가해자 2는 피해자가 사과를 강요했다고 신고함. 피해자는 가해자 1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으나 가해자

1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 이후 피해자는 학교 재계약에서 제외됨.

*** 접수**

- 피해자가 외부에 신고하고 상급기관에 신고접수함.

*** 조사 및 심의**

-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됨. 그러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상급기관에서 학교 측에 절차를 준수한 재심의를 권고했으나,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는 피해자가 심의 진행을 원치 않음.

*** 사안 이후**

- 상급기관에서 피해자 상담을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학교의 사건처리 절차와 2차 피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함.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조사 실시.

2가지 사례에 대한 권고사항

- 사적인 만남 강요는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소위 '남녀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나,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도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2018)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주요한 성희롱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고충상담원 및 담당자는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해야합니다.
- 사례 1의 경우 피해자가 학교장과 교감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교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쾌한 발언 등을 한 점은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장과 교감의 2차 가해 행위를 별도의 사안으로 상급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의 경우 피해자가 학교장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수용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학교 분위기를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주의·경고를 주는 등 사안을 무마하기 위한 학교장의 행위는 전형적인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2차 피해 가해 행위를 별도의 사안으로 상급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직 또는 계약만료 등으로 더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학교에서는 사안의 원인과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하다면 성고충심의위원회까지 진행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기관 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같은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례 8

■ SNS에 공론화 되면서 2차 피해가 심화된 사례

1. **피해자** : 학생 다수
2. **가해자** : 교사 다수
3. **피해유형** : 언어적 성희롱

[사안개요]

- SNS에 학생들의 성희롱 폭로 글이 게시됨.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자가 야하게 입고 다니면 남자들은 성욕을 참을 수 없다", "(성추행 관련해서) 힘든 것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남자는 원래 그렇다. 넘어가야 한다." 등 일부 선생님들이 성희롱 발언을 함.

[사안처리과정]

*** 신고 전**

- SNS를 통한 공론화 및 지역시민단체의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됨.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2차 피해를 입음.

*** 접수**

- 학교에서 SNS로 인지 후 1차 익명 설문조사 실시 및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시됨.

*** 조사 및 심의**

-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익명 설문조사가 실시됨.

*** 징계 및 관련 조치**

-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직원들이 공개 사과함.

권고사항

- 본 사안의 경우 사안 공론화 이후 피해 학생들이 학내에서의 소문과 비난 등 2차 피해를 입으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측의 초동대응이 중요합니다. 학내에서 의견 결정이 어려울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전문 상담소나 시민단체를 통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사안처리 진행 상황을 학생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에 대해 공유하고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표명할 때 학생들이 학교를 보다 신뢰하고 원활한 사안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게 어렵다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과 공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 9

■ 사안 접수 이후 동료와 관리자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

1. **피해자** : 기간제 교사(여)
2. **가해자** : (1) 1차 가해자 : 교사(남)
   (2) 2차 가해자 : 동료 교사 다수와 관리자
3. **피해유형** : 언어적 성희롱

[사안개요]

- 가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블루스 등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함. 이러한 본 사안에 추가로 동료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함. 피해자는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으나, 동료 교사들은 "예민한 것 같다.", "남자가 술을 마시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함.

[사안처리과정]

*** 접수**

-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림. 이후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를 알리고 논의하는 도중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오히려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압박을 받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를 요구했으나 공간 분리를 하지 않아 가해자와 대면하는 상황이 발생함.

*** 사안 이후**

- 학교 내 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시효만료로 처리되지 않음.

권고사항

- 피해자가 학교의 관리책임자에게 피해를 알렸으나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외부로 사건을 알리지 말 것을 압박하는 등의 행위는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차 피해 발생 시 별도의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급기관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동료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논의하는 피해자에게 '예민하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 또한 전형적인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차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리자가 사안인지 후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공지하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진정사건에 대한 시효를 두고 있으나, 교내에서 원 사안 및 2차 피해에 관한 사건 처리를 하는 경우 1년의 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기관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평가 권한이 있는 교사가 해당 교사에게 블루스 등을 강요한 행위는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 위원회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류의 행위들입니다.

사례 10

■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지 없었던 사례

1. **피해자** : 교직원(여)
2. **가해자** : 행정실장(남)
3. **피해유형** :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사적인 만남 강요

[사안개요]

- 가해자는 평소에 여성 직원들의 외모 평가를 해 옴. 회식 자리에서는 여성 직원들에게 자신을 사적인 호칭으로 부르기를 강요함. 그 외에도 업무 시간 중에 "요즘 미투 너무 무섭다. 여자들한테 뭘 못하겠다. 나도 미투하고 싶다"라고 말함.

[사안처리과정]

*** 접수**

- 피해자가 학교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였지만, 직급자가 '성희롱은 처벌이 약하니 참고 다녀라'는 발언을 함.

*** 조사 및 심의**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이 성립되었고, 징계 요구 결정됨.

*** 징계 및 관련 조치**

- 학교장이 회의에서 가해자가 직위해제 되었음을 공지했으나, 실제 가해자는 학교에 계속 출근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것에 대해 학교장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학교장은 피해자가 예민하다며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합의를 종용함.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이후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 처리함.

*** 사안 이후**

- 학교는 피해자의 유급휴가 및 공간 분리 조치 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지 않음.

권고사항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안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조직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또는 성고충상담원은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유급휴가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원하는 유급휴가 기간을 신청받아 학교에서 의논 후 결정·부여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것은 이사장의 권한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 후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는 것은 징계 절차가 지나치게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판단은 징계 여부가 문제되는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밖의 성희롱 건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강제추행 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교내 징계 절차에서는 성희롱 건에 대해서 여전히 판단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에서의 '신체적 성희롱'과 형사법상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은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추행이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관 내 확인된 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징계 가능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돼야 하는 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처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방침을 설명해야 합니다.

4. 성사안 처리에 대한 판례 및 결정례

- 자료출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2021년 교육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안처리 과정에서 근거한 판례 및 결정례

■ 성인지감수성 판단의 근거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

[사안]

대학교수인 가해자가 학생들에게 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판단]

2심은 일부 불필요한 신체 접촉,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그 후에도 계속 수업을 수강한 점, 가해자가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학생들과 농담을 하거나 연애 상담을 하는 등 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문제의 언행이 대화 중 극히 일부 내용인 점 등을 이유로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음. 또한 피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 대법원이 이러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관련 법리를 설명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명하며, 2심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며 든 이유들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만한 사유로 들 수 없고, 2심과 같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은연중에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평가를 내렸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음

시사점

성희롱의 개념 및 성립요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2차 피해의 개념, 성인지감수성 개념 등을 설명한 중요 판례입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로서의 직위해제의 적법성 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2017-000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

[사안]

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은 17세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추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직위가 해제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소청 심사를 청구한 사안임.

[판단]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이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수사가 개시된 바 있고, 이러한 혐의 사실은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2호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점, 수사가 개시된 비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 향후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시사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요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의 성 비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대한 사안이며, 같은 항에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제3호)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제4호) 또한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 및 분리 조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143600 결정 학교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사안]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교원)인 진정인은 연수 중 부장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교감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진정인도 교육청 교육감, 도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장은 가해자와 진정인에 대한 분리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음.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소홀을 이유로 진정한 사안임.

[판단]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진정인 교장에게 신고하였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와 진정인은 1학기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였고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과 업무 연관성으로 인하여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었음.

이로 인한 피해는 성추행 사실을 제보할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라는 점, 실제로 진정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진정인들에게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요청한 점,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잦은 조퇴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피해로 판단함. 이에 따라 도교육청 및 도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전체에 대하여 직무교육 실시,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2019. 2.)」을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전파하고 매뉴얼을 충실히 적용하고 이해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결정함.

시사점

이 사안에서 피진정인들은 이 사안 분리 조치가 다소 미흡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규정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감사·징계처분, 직위해제나 전보, 병가 또는 교육훈련과 같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을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성추행 혐의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굳이 징계 조치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전보, 피해자에게 병가를 포함한 유급휴가 부여 등 인사조치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인 점, 보다 효과적인 분리 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였고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권한이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조치하는 행위는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아울러 피진정인들은 업무분장이나 권한 규정을 떠나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 등을 통하여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성 비위 사안의 경우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려 조치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 사안처리 절차 중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협의자의 의견 진술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2017-000 파면 처분취소 청구)----------

[사안]

초등학교 교사인 청구인은 몇 달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7명을 3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이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됨), 이후 파면됨.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처분 사유 부존재 등을 이유로 교육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소청 심사를 청구한 사안임.

[판단]

청구인이 구속 상태에서 있어 징계 절차에 출석하지 못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절차상 하자 주장은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음.

시사점

징계 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징계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향후 절차상 하자로 이의제기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논거, 교원의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 교원의 학생에 대한 성 비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조명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성 비위는 학생들의 성 정체성과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중히 다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한 사례입니다.

■ 2차 피해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 및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028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안]

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소속 학교 여교사가 같은 여성인 교무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자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판단]

원고가 2차 피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함.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아울러 감경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대신 '불문경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함.

시사점

2차 피해 또는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로 인정된 행위 태양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교장은 교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안이 해결되도록 할 학교 내 최종적인 책임자 지위인 점,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제삼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묵시적으로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한 것은 위와 같은 교내 최종 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점,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보다 가벼운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업무 관련성 판단에 따른 판례 및 결정례

■ 초등학교 교감의 여성 교사 성희롱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15진정0592300 결정 초등학교 교감의 여성 교사 성희롱)----------

[사안]

교감(피진정인)이 회식 중 혹은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는 중에 소속 학교 여교사(진정인)를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 문제된 사안임.

[판단]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하급직 여성 교사인 진정인과 둘만 있는 자동차 안에서 '섹스리스'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특별히 이와 같은 발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성희롱 행위에 해당함. 저녁 11시가 넘는 시간에 진정인의 거주지 앞에서 '커피 한잔 달라'며 혼자 사는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뽀뽀'라고 말하며 진정인 쪽으로 몸을 들이민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함.

시사점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 내용을 전해 듣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일부 진정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내용을 직접 들은 참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도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내용을 직접 듣거나 전해 들은 참고인도 없는 일부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객관적 증거부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안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교육환경 조성에서의 교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직원 성희롱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171700 결정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직원 성희롱)----------

[사안]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행정실 직원들, 영양교사에게 성적 언동을 한 사안임.

[판단]

피진정인 행정실장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취지를 부인하는 등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진정인들이 법인과 학교, 직속상관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성희롱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함.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및 문답서, 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일기형식 메모 등), 피진정인 문답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차별시정위원회 출석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함.

기혼자에게 애인이 있으면 데이트하라고 말한 것은 기혼자에게 또 다른 이성 관계를 함의하는 것이고, 수차 몸매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여성의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로서 모두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으로 평가함. '선생님은 남자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발언한 것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덕 관념'이 부족한 사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으로 평가함.

시사점

학교 내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교사-학생 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특별프로그램 강사, 경비 담당자, 청소 담당자, 급식 담당자, 사서, 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SPO 등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소속과 근무계약 형태에 따라서 사안처리에 대한 주체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사안처리를 해야하는 업무관계의 범위에 포괄됩니다.

■ 초등학교 교사의 파견 직원 성희롱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1081 결정 성희롱)----------

[사안]

초등학교 교사인 피진정인이 민간업체의 직원으로서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컴퓨터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진정인을 상대로 회식 장소에서 손을 만지거나 등을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성적 언동을 한 것이 문제 된 사안임.

[판단]

민간업체 소속으로 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강사가 회식에서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재계약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였으므로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피진정인의 행위를 강하게 뿌리치거나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인정함. 사건 발생 이후 피진정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징계조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며 학교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민간업체 직원들에게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명시함.

시사점

파견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분리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재계약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민간업체의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적극적인 문제 제기 및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 학교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는 민간업체 직원들에게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성사안 처리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4. 20.〉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20.〉

1.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
2.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여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한다)
3.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4.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 ·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5. 29.,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4. 5. 28.〉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1. 12.〉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2021. 1. 12.〉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13. 3. 23., 2014. 1. 21., 2015. 2. 3., 2015. 12. 1., 2021. 1. 12.〉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5. 2. 3., 2016. 5. 29., 2021. 1. 12.〉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5. 2. 3., 2021. 1. 12.〉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5. 2. 3., 2021. 1. 12.〉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 ·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인증

⑩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 21., 2015. 2. 3., 2021. 1. 12.〉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4. 17., 2021. 1. 12.〉

⑫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1., 2015. 2. 3., 2016. 5. 29., 2021. 1. 12.〉

[제목개정 2016. 5. 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 · 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 · 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 형법(성폭력처벌법 제2조 관련)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 등 상해 ·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성희롱 ·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②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 그 신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 · 감찰 · 인사 · 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 · 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제8조(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①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제7조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등이나 신고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 인사상 불이익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 조치가 제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등이 부담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 임명제청권자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임용권자등의 의무) ①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임용권자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임)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29317호, 2018.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성고충심의위원회 외 성사안 구제 외부 기관 안내

기관	지원내용
국가인권위원회	-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피해 당사자 이외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단체)도 진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같은 진정 원인 사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각하 처리됨. -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331),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별 시정위원회에 상정하며 조사 중 또는 조사 종결 후에도 합의 또는 조정이 이뤄지기도 함. - 조사 결과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 할 수 있음. -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용 노동부로 이관시켜 추가 조사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교육 공무원 보통 고충 심사위원회	-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직위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에 대해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음. -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임용권자 등에 신고할 수 있음 - 임용권자 등이 신고를 받으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 고충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관서	-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함. 사용자의 해고 등 부당한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함

기관	지원내용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관서	-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의무,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 비밀 누설 금지의무,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음. - 사법적 절차로, 사업주의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고소, 고발이 가능함.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거나, 문서, 우편, 구두, 온라인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 -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피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사실 조사를 진행 -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 완료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 조치 후 행정 종결함, 시정 기한 내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
민사소송	- 현행법상 성희롱 행위자의 행위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등에 의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음.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자나 사업중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을 직접 행한 행위자는 물론이고 일정한 경우 행위자의 사업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액이 2천만 원 이하면 간단히 소액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감보의 제공을 명 할 수 있음.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음.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고소고발	- 사업주가 신고자, 피해자에 대해 하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16항)을 한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 할 수 있음(공소시효는 5년) - 한편 성희롱이 「형법」, 「성폭력처법법」등 관련 법률에 위반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할 수 있음.

학교(기관)내 성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북

발 행 일 : 2025. 3.

발 행 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성인식개선반

참고자료 : 교육부(2023)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대응업무 가이드

인 쇄 처 : ㈜애드젯 Tel. 051-244-2445

* 해당파일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교육 포털「공감」** 도움말 탑재